

사법감시

Justice Watch Newsletter

격월간 「사법감시」 / 제5호 / 1996년 6월 / 등록일: 1996년 2월 23일 / 등록번호: 마-2428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목 차

초점	
법조윤리강령을 제정하자	2
전망	
미래지향의 검찰이 보인다	4
- 대검 전산관리담당관 정진섭 부장검사와의 인터뷰	
특집	
예비법조인이 본 사법현실	7
- 제27기 사법연수원생 설문조사	
공익소송	
노인복지, 시혜가 아닌 권리	10
- 대법원, 노령수당지급제외처분취소청구소송 파기환송	
모니터리포트	
수원지검 329호실에서 짓밟힌 피의자의 인권	12
기소종지 수배에 대한 염치 없는 발령	13
남부지원 스케치	14
통신문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인정되어야 한다	15
김석원 실명확인업무 방해혐의에 대한 엄정수사 요청서한	17
시민발언대	
한시간 동안 느낀 검찰의 권위주의	19
판결읽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어디로 가고 있는가?	20
사법통계청	
법원재판, 헌법소원에 포함해야한다 - 61.5%	23
이것만은 고치자	
사법에도 도입해야 할 서비스 마인드	24
단평	
국가보안법에 대한 사법부의 또하나의 견제	25
나의 사법피해사례	
진실을 밝히기가 이렇게 힘들어야	26
사법정의를 위해 나선 시민들	
조서작성, 무엇이 문제인가?	28
화원순례1 - "옛돼지 사건"의 김형국씨	30
화원 천교의 날	31

예비법조인이 본 사법현실

〔사법감시〕 편집팀에서는 제27기 사법연수원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를 싣는다. 선배법조인의 윤리의식에 대한 평가에서 연수원생들은 판사가 검사, 변호사보다 윤리적이라고 응답하였다.

수원지검 329호실에서 짓밟힌 피의자의 인권



검찰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중 가혹행위를 당해, 이를 비판하여 자살한 사건이 있었다. 사법감시센터에서 이 사건의 전모를 조사했다.

노인복지, 시혜가 아닌 권리



대법원에서 노령수당 지급 연령제한과 관련하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제기한 소송을 파기환송하였다. 이 소송의 숨은 이야기를 이찬진 변호사에게 직접 들어본다.

대법원과 현재의 갈등

재판의 헌법소원 포함여부를 둘러싼 현재와 대법원의 갈등, 이에 대한 참여연대의 의견과 김선택교수의 해법이 「통신문」과 「판결읽기」에 실려있다.

김석원 사건 수사에 대한 검찰의 답변

참여연대는 4월 19일 전 쌍용그룹 회장 김석원씨를 실명 확인업무 방해혐의로 고발했고, 이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요청하는 서한을 서울지검 홍만표검사에게 보냈다. 서한과 함께 홍검사의 답변을 함께 들어본다.

법조윤리강령을 제정하자

미 국이나 영국과 같은 앵글로 색슨계 국가들을 흔히 불문법 국가라고 말한다. 독일, 프랑스와 같은 대륙법계 국가들의 성문법주의에 대해 이르는 말이다. 이들은 명문의 법률 대신에 판례를 통하여 법적 규범을 형성해 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영미와 같은 나라의 법률을 뜯어보는 순간 이러한 규정이 대단히 잘못되었음을 알게 되고 당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불문'은 커녕 '거미줄 같은 성문'의 국가임을 확인하게 되기 때문이다.

거미줄 같은 법조인 윤리

바로 그 하나가 바로 '법조인 윤리'에 관한 것이다. 미국변호사협회(ABA)는 이미 거의 한 세기 전인 1908년 최초로 <직업적 윤리규범집>(Cannons of Professional Ethics)을 채택하였다. 그 이후 변호사들에 대한 윤리규정은 변화를 거듭해 1983년 현재의 <직업적 행동에 관한 모범규칙>(Model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이 완성되고 1992년 개정되어 실시되고 있다. 이 규칙은 35개 이상의 주에서 채택하여 거의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수백 개 조문으로 이루어진 이 규칙은 변호사가 자신의 활동과정에서 당사자와 법원, 검찰 등과의 관계를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소상하게 가르쳐 주고 있다. 80만 명에 이르는 미국의 변호사들이 이러한 규정을 통하여 직업윤리의 기준을 제시받고 있는 것이다.

그 뿐만이 아니다. 형사사건에 관한 검찰과 언론의 윤리에 관한 <ABA Standards for Criminal Justice: The Prosecution and Defense Function: Providing

Defense Services: Fair Trial and Free Press>, 판사들의 윤리에 관한 <ABA Code of Judicial Conduct>, 상사분쟁의 중재 윤리에 관한 <Code of Ethics of the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for Arbitrators in Commercial Disputes>와 같은 특수영역의 윤리강령 등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윤리강령이 지천을 이루고 있다.

심지어 대학교수들조차 학생에 대한 의무, 법과대학과 대학에 대한 의무, 학자로서의 의무, 일반 대중에 대한 의무 등을 규정한 윤리강령(Association of American Law Schools Statement of Good Practices by Law Professors in the Discharges of Their Ethical and Professional Responsibilities)을 가지고 있다. 유럽국가들도 '윤리강령 천국'인 미국만큼은 못하지만 각자 고유하고 보편적인 윤리강령을 지니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은 변호사들의 윤리현장을 채택하여 전 유럽 회원국에 준수되도록 한 바 있다. <Code of Conduct for Lawyers in the European Community>가 바로 그것이다.

윤리강령을 제정하였다고 곧바로 법조인들의 윤리가 향상된다는 보장은 없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법조인들의 행동 기준이 되고 비판의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그 유효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비빌 언덕'을 마련해 놓으면 변호사회, 법원, 검찰, 시민단체 등에서 법조인들의 비윤리적인 행동들에 대한 견제가 가능하다. 그 무엇보다도 법조인 스스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한 기준을 설정 받을 수 있어 행동의 예측과 활동의 안정을 꾀할 수 있다.

법조윤리강령기초위원회를 신설하자

다행히 이러한 노력은 이미 곳곳에서 시작되고 있다. 사법연수원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법조윤리 강의가 지속되어 왔고 지난 1994년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는 <미국변호사윤리강령>을 책으로 펴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7개항의 강령과 본문5장 48조문으로 구성된 윤리규칙을 갖고 있으며 95년 7월1일부터 법관윤리강령이 대법원 규칙으로 시행되고 있다. 부족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법조윤리강령 채택의 밑거름이 될 것임

이 명확하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노력들이 구체적인 열매를 맺도록 해야 할 때가 왔다. 대한변호사협회 내에 명망이 높은 법조인들과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법조윤리강령기초위원회>를 설치하자. 외국에 자료조사 및 연구반도 파견하고 여론조사도 하면서 몇 년이 걸려도 좋으니까 이 위원회가 판사, 검사, 변호사, 법학교수 등의 각 영역에 걸친 거미줄 같은 윤리강령 초안을 만들어 내도록 하자. 이 노력으로 우리 법조인들이 국민들로부터 존경받고 사법정의를 이 땅에 만발하도록 하자.

Photo News

부패방지법 제정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돌입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 본부는 지난 6월 4일부터 부패방지법 제정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하였다. 지난 1월 4일 공직자윤리법, 공익정보제보자 보호법, 돈세탁방지법, 부패방지특별수사부 구성 등의 종합적인 부패방지법을 내놓은 맑은사회만들기 본부는 올 9월 정기국회에 입법청원할 계획으로, 100만 시민들의 서명을 통해 부패방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 국민적인 뜻을 모아내기로 하였다. 서명운동은 서울역광장을 출발로 여러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미래지향의 검찰이 보인다

대검찰청 전산관리담당관 정진섭 부장검사와의 인터뷰

아카시아 향기가 대검찰 청사를 뒤덮은 5월 23일 오후

검찰 내부의 전산통으로 알려진 대검찰청 전산관리담당관 정진섭 검사를 찾았다.

책상 뒷편에 붙어 있는 Internet site map이 정검사의 컴퓨터 실력이 소문만이 아님을 입증해 주었다.

‘미래지향적 검사’로 잘 알려져 있는데 한국사회의 미래를 어떻게 보는지요

부정적인 측면을 감안하더라도 전세계적으로 드물게 희망이 있는 나라입니다. 5.16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을 거듭했지만 경제적으로나 언론자유 면에서 세계에서 몇번째 안에 들게 되었지요. 미래에 중요한 것은 사회의 응집력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인데 그 역할을 사회운동에서도 해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검찰의 전산화의 현황과 PROS21 계획에 대해서

83년도부터 검찰업무전산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전산실이 84년도에 처음 생겼고 IBM 주전산기 한 대를 도입해서 전산화를 시작한 것이지요.

PROS21(Prosecution Research and Office automation System for 21 century)은 21세기로 가는 길목에서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가치 중에서 큰 비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산처리를 하지 않으면 국가경쟁이 안되는 단계가 된 거죠. 사건사무 처리나 지료를 통한 벌과금 징수등 인력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지만 아직은 검찰 본연의 수사업무, 또 국민을 위한 전산화까지는 아직 부족합니

다. 검사들이 실제 수사하는데 필요한 판례제공과 검찰의 예규, 지시사항, 업무지침 등을 컴퓨터를 통해 제공하고 국민들에게도 검찰의 홍보사항을 알려주는 등의 서비스를 할 것입니다.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이 21세기 검찰 정보화의 큰 방향이 정보화로 인해 빚어지는 부작용 이를테면 해커, 폰뱅킹, 컴퓨터를 이용한 사기사범 등의 신종범죄에 대해서 범죄진압능력을 갖춘다는 목표를 가지고 21세기 검찰 정보화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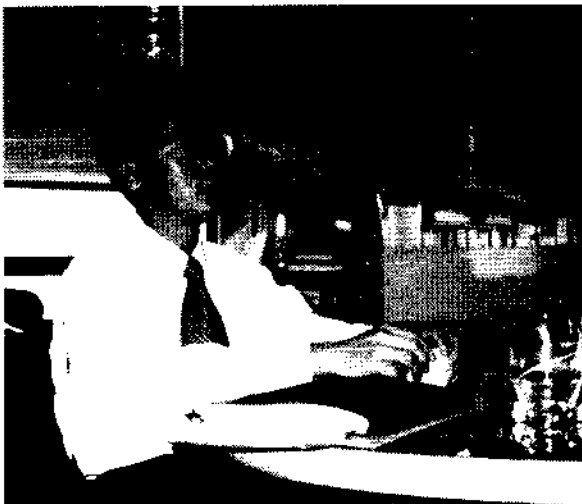
현재의 일을 하기 까지 어떤 과정을 밟아 오셨는지

검사로서는 좀 독특하게 법무부와 서울 지검에 근무하면서 지적소유권 전담 검사 생활을 했습니다. 법무부에 근무시절 상공부에서 지적소유권 문제에 대해 협조를 요청해와 그것을 계기로 관심을 갖게 되었죠. 지적소유권 침해의 문제가 국익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요. 통상마찰요인도 되고, 해적판서적이 나도는 것이 작은 이득을 얻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제사회에서 얻는 해적국가라는 오명은 결국 상대국으로부터는 무역보복을 당하게 됩니다. 국내적으로도 소프트웨어 불법복제해서 무단으로 쓰던 개발자들의 창작의욕이 꺾이게 되어서 오히려 산업발전에 지장이 됩니다.

정진섭 부장검사는 '지적소유권 보호대책'이라는 책을 발간하고 일부는 영역해서 미국무역대표부에도 홍보자료로 제출하였으며 한미통상협상에도 참여하였다. 정검사는 이태원 단속으로 '악명'이 높다. 올림픽 직후 가짜 상표 단속으로 가짜 상표를 부착한 상품판매상들이 밀집한 이태원 상인들이 가장 원망을 많이 하는 검사가 된 것이다. 이런 원망은 상인들에게서 끝나지 않고 해적판 서적 단속 때문에 대학교수들, 특히 의대·공대 교수들의 항의전화도 많이 받았다고 한다. 그 이후로는 아래한글과 도깨비 한글 카드 등 첨단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단속에도 이름을 날렸다. 그러나 그는 결국 이태원이 쇼핑의 천국이라는 명성은 남고 가짜의 천국이라는 오명은 없어졌다고 보고 있고 점차 불법복제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어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평검사 시절은

● 검사는 무죄를 먹이줘야 성숙한 검사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81년도에 남부지청 총각 초임검사 시절 물불을 안가리고 사무실에서 밤 12시까지 수사 하고 결정문 쓰고 지나던중 무죄가 나옵니다. 아! 무죄 안먹여본 사람은 무죄먹은 검사 심정을 모를 거예요. 그게 굉장히 심혈을 기울인 사건인데 1심에서 무죄가 났어요. 그래서 항소이유서를 한 40장을 써서 진짜 검사가 억울하다고 내기도 하였지요. 공판 진행중 사건의 내용이 변질 되면서 결국 무죄를 받았는데, 그날 동아일보 사회면 톱으로 '억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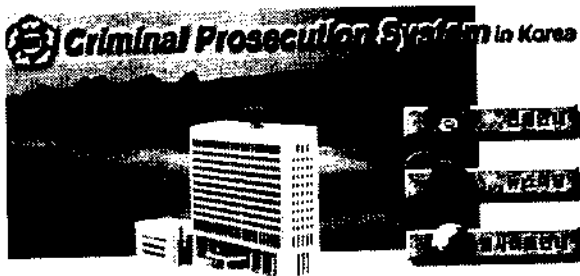
한 옥살이 3개월, 서울지검 남부지청 정진섭 검사가 기소한 절도 남 모 피고인이 검찰의 수사 잘못으로 인해서...' 라고 보도 되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다. 위에 가서 야단도 많이 맞고.

사실은 '억울한 옥살이' 라고 보도가 될 때 수사관의 입장에서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참여한 내부적인 증거 판단의 견해차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 해도 언론의 그러한 보도를 이해합니다.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할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괴심을 가져라 그런 뜻에서 보도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정검사는 두루 검찰 요직을 거쳐 왔다. 프랑스 유학, 강력사건 등을 전담한 후 법무부 행정검사, 기획검사 쪽으로 방향이 바뀌면서 정검사는 매우 신명나는 작업을 하게 된다. 법무부에서는 법무부의 40년 역사를 정리해서 '법무부사'라는 책을 쓰기도 하고, 형법개정작업을 하면서 회의록만 8권, 형법개정자료집 5권 등의 엄청난 양의 자료를 만들어내기도 하였다.

강력어나 공안검사쪽의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 검사로서 발전하려면 강력부장을 할 수도 있고 특수부장이나 공안부장을 할 수도 있는 거지요. 형사부, 특수부, 총무부, 강력부는 직접 또는 파견근무를 해봤고 기획검사, 대검전산까지 했는데 사실 공안검사는 한 번도 못해봤어요. 피할 이유는 없습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던 검찰에 몸을 담고 있어서 검찰을 지키는 쪽의 논리를 가지고 있겠지만 검찰권의 행사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검찰권 행사는 사회의 반영입니다. 사회 수준이 낮은 상태에서 검찰만 대단히 도덕적인 덕목을 갖추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봐요. 법조계 뿐만 아니라 금융계, 언론계, 의료계 모든 사회분야들이 같이 레벨업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검찰이 할 일은 국가법률로서 정해진 것을 성실하게 집행하는 것이고, 그 활동중에 공안부가 욕은 많이 먹었지만 오늘의 민주사회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다



검찰에서 운영하고 있는 Internet Homepage

고 봅니다. 완벽한 민주사회는 계속 추구하는 것이지 우리가 지금 보는 현재 그대로는 아니거든요.

국가를 대신해서 분쟁을 해결해 주는 것이 검사이기 때문에 검찰은 공익의 대표자인데도 사실은 수사관으로서의 기능, 수사의 주체자라는 측면이 강조되어 권위적이고 단려하다는 인상을 주지요. 수사관으로서의 기능은 유지하되 국민에게 봉사하는 기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열어야죠. 법률서비스 같은 것도 잘해주고.

검찰은 그래도 비교적 정치성이 약한 조직이에요. 절대로 검사가 거짓말을 하는 경우는 없어요. 모든 검찰의 수사는 소송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검찰에서 진실과 다른 허위로 사건을 어떻게 하겠다던지 하는 검사는 100명 중에 1명도 없다고 봐요.

검찰 입장에서 사법개혁의 방향은



전반적으로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감하는데 너무 미국식 사법제도에 경도되어서 법조인 수에 집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

이 듭니다. 저는 당장 변호사할 생각은 없으니까 큰 이해관계는 없는데 숫자를 늘린다는 것은 당장 과당경쟁이 오거든요. 법률서비스가 개선되는 측면이 있겠지만 저질서비스, 과당유치활동에 따른 부작용, 이런 것도 크다고 봐요.

중요한 것은 미래의 법률문제들을 척척 해결해 내는 법조계가 되어야겠죠. 미래의 법률문제는 오늘의 법률 문제와는 상당히 달라질것이거든요.

사법감시자에 대한 의견, 바라는 바는



출범을 했으니까 진짜로 양심의 목소리를 전달해 주는 옴부즈맨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생각은 불쾌하다는 것 보다는 걱정이라고 해야 옳지요. 사법부 주변에 적지않은 매체가 일종의 사이버 언론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법감시는 개인적으로는 아주 신선하고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참신하게 법조계의 아웃사이드 입장에서 관찰하면서 충고 해주는 매체로서의 특성화는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인 것 같습니다. 제목이 부담스럽기는 하더라도, 감시센터 이러니까 감독같기도 하고... 중요한 것은 사법을 감시할만큼의 전문성과 윤리성이라고 봅니다. 결국은 전문성이 되겠죠. 「사법감시」도 미래지향적 방향을 가지지 않으면 오래 못가요. 수명이 짧다고요. 검찰을 위해서는 아주 좋은 일일 것 같아요. 기대가 큼니다.

구독자가 되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구독료를 납부해 주신 분들께는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사법감시」 편집팀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주소와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사법감시」와 구독카드를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 **구독료납부방법** ■

구독료 : 1년(6회) / 2만원

• **지로납부**

지로용지(통지서 란)에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를 기재하여 시중은행에 납부

지로번호: 7615524

• **무통장입금** : 예금주 : 문혜진

국민은행 015-21-0808-184

제일은행 325-20-123107

상업은행 192-08-324269

농협 094-02-092853

예비 법조인이 본 사법현실

- 제27기 사법연수원생들에 대한 설문조사 -

「사법감시」 편집팀에서는 1996년 5월 15일~6월 15일 한달 동안 우편을 통한 배포·수거방법으로 제27기 사법연수원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사법감시」 2호의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의 눈으로 본 사법현실」에 대한 설문조사의 후속으로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21세기의 법조계를 끌고 나갈 예비법조인들로서 사법연수원생들이 진단한 사법현실과 선배 법조인들에 대한 평가정도를 알기 위한 것이었다.

제27기 사법연수원 315명 전원에게 설문을 발송하였고 이 중 75명이 응답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연수원생은 남자 96%, 여자 4%, 평균연령 28.9세였으며 법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87.6%, 법학이외의 전공을 한 사람은 13.3%였다. 조사의 진행은 참여연대 사회조사실에서 담당하였다.

판사진출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법조인을 지원한 동기에 대한 질문”에는 ‘사회정의에 기여’하기 위함(35.9%), ‘장래에 하고자 하는 일의 수단’ (31.3%)라는 응답이 ‘안정된 수입’ (4.7%)이나 ‘높은 사회적 대우’ (6.3%)보다도 훨씬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연수원 수료 후 희망 진출직역에 대해서는 판사가 44.1%로 검사 27.9%, 변호사 17.6%에 비해 높은 응답률을 보여 변호사보다 판검사에 대한 연수원생들의 선호도를 보여주었다. 이 결과는 최근 연수원 내부의 판검사 선호도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를 확인해 주는 것이며, 전직대통령 수사 등 최근 검찰의 두드러진 활약상에도 불구하고 검사보다는 판사에 대해 여전히 높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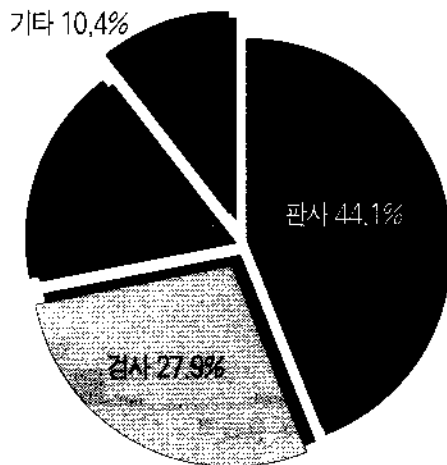
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 사회

편집팀에서는 예비법조인으로서의 사법연수원생들과 일반국민들이 갖고 있는 법에 대한 의식을 비교하기

위하여 1991년 4월 한국법제연구원에서 2천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같은 문항을 설정하였다. (조사실시시기의 차이로 인해 결과의 비교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점을 밝힌다.)

우선 ‘법’이란 말이 주는 느낌에 대해서는 국민들이나 연수원생들 모두 권위적(국민들 32%, 연수원생 45.2%)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의 편파적(24.7%)이라는 느낌에 비해 연수원생들은 ‘공평하다’ (15.1%)고 하여 국민들의 법감정과 차이를 보였다. “우리 사회가 법이 잘 지켜지고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국민들과 연수원생들 간에 차이가 없이 모두 ‘그렇지 않다’ (국민들 82.4%, 연수원생 84.9%)고 대답하였

연수원 수료후 진출 희망 지역은?



고 이러한 이유로 국민들은 '까다롭고 자주 바뀌는 법 절차' (33.2%)를 들었으나 연수원생들은 6.1%만이 이 항목에 응답하였고, 두 집단 모두 '법의 집행이 엄격하지 못하여서' (국민들 24.1%, 연수원생 34.8%)라고 응답하였다.

의외인 것은 예비법조인으로서의 연수원생들이 '법 이외의 다른 방법이 편하' (28.8%)고, '법대로 살면 손해를 보기' (21.2%) 때문에 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응답해 법치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물론 법치의 실현은 법조인만의 몫은 결코 아니다. 그러나 법조인으로서 '법대로 하는 것이 편하고', '법대로 살면 손해를 보지 않는' 사회를 만들 책임이 있는 것이다. 21세기 법조를 풀어나갈 사람들이기에 이런 현실에 대한 극복방안을 주도적으로 만드는 작업도 어느 정도는 이 설문지의 응답자들 몫일 수 밖에 없다.

사법과 권력의 유착관계 특해 크다

국선변호인의 불성실변론, 검사의 피의자 가혹행위 등 법조인의 윤리의식을 의심케 하는 사건들이 최근 빈발하여 불의를 빚고 있다. 선배 법조인들의 윤리의식에 대해 후배 법조인인 연수원생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우선 사법과 권력의 유착관계에 대한 질문에 연수원생들은 '밀접한 유착으로 그 폐해가 크다' (51.4%)고 응답하여 사법의 독립성이 크게 침해당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외에 '유착관계에 있으나 사법작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견이 29.7%를 차지하였고, 가타의 란에 '대체로 독립적이나 정치적 사건에서는 유착관계가 있다'는 의견과 '유착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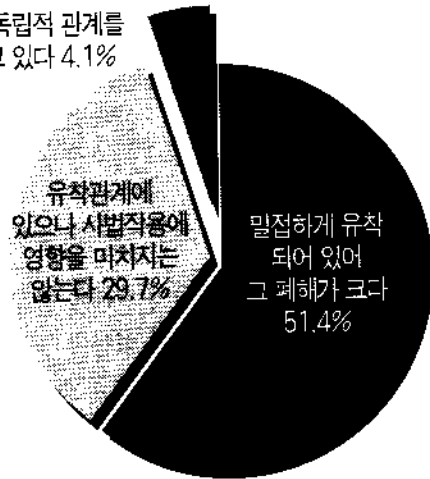
계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많은 수의 법조인이 있다', '유착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법이 필요이상으로 정치적 고려를 한다'는 등의 의견이 있었다.

사법과 권력의 유착관계가 있다고 보십니까?

엄연히 독립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4.1%

유착관계에 있으나 사법작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 29.7%

밀접하게 유착되어 있어 그 폐해가 크다 5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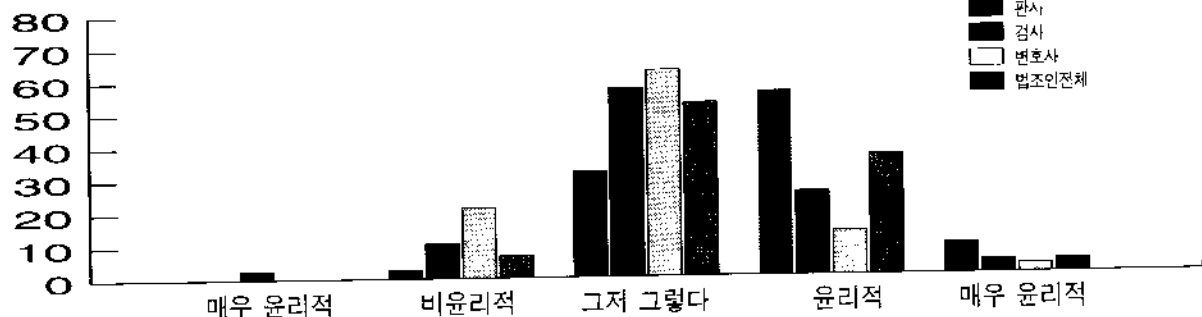
판사가 가장 윤리적이다

"현재 판사, 검사, 변호사가 갖고 있는 윤리의식 정도가 어떠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물음에 대해 이들 세 집단 중 판사가 가장 윤리적이라는 응답결과를 얻었다.

판사의 경우 '그저 그렇다' 32%, '윤리적이다' 56%, '매우 윤리적이다' 9.3%로 응답자의 65.3%가 윤리적이라고 평가한 반면, 같은 질문에서 검사에 대해서 윤리적이라고 대답한 응답자는 29.3%, 비윤리적이라고 평가한 응답자는 13.4%였으며, 변호사에 대해서

응답자 (%)

법조인들이 갖고 있는 윤리의식의 정도가 어떠하다고 생각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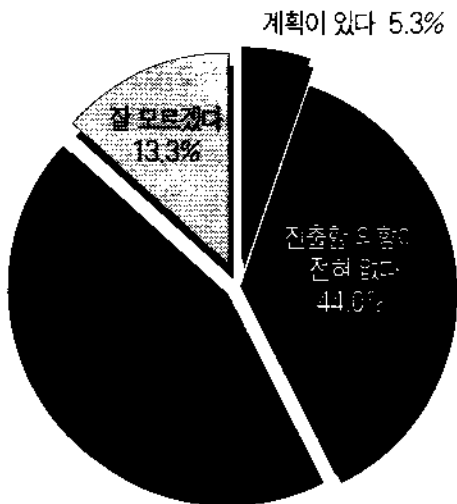


는 16%의 응답자가 윤리적, 21.3%가 비윤리적이라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윤리의식의 평가정도가 연수원 수료이후 직역선택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선배 법조인의 윤리의식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연수원생들은 「법조윤리」라는 과목을 수강하고 있다. 이 과목에 대해서 '매우 형식적'이라는 평가가 42.7%를 차지했으며 '형식적이나 없는 것보다 낫다'는 응답이 46.7%를 점했다. 법조인의 윤리의식을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의 가치관에 돌릴 수는 없다. 개별 법조인으로서 직업윤리의식으로 철저히 무장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강제하기 위하여 「법조윤리강령」등의 장치가 필요하다. 또한 연수원의 「법조윤리」 과목도 형식적인 도덕교육이 아닌 구체적인 행동에 대한 사례를 연구하고 행동윤리를 습득하는 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검사임용탈락, 79%가 부당한 조치로 보아

최근 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법조 출신의 후보자들이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났었다. 이러한 법조인의 정치진출에 대해서 연수원생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58.7%). 또한 42.6%가 상황이 된다면 진출하거나 진출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하여 4.11 총선에서 급증한 법조인의 정치진출이 이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정치권에 진출할 의향이 있습니까?



25기 연수원수료자들의 검사임용 탈락에 대해서는 78.7%가 부당한 조치라고 보았고, 탈락과정에서 문제가 된 국가보안법 폐지와 노동법의 적용현실에 대해서는 89.2%가 개정되거나 폐지되어야 한다고 보아 검사임용탈락 사건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었다.

정치권의 결단에 의한 전직 대통령 재판 (62.2%)

사법개혁의 중심점에 대한 질문에서는 법조일원화(29.2%), 사법시험과 법조인 선출과정의 개선(18.4%), 법원과 검찰의 독립성 확보(16.4%), 사법관 행과 의식구조의 변화(14.3%)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사법비용의 문제와 행정문제, 법률구조제도의 개선 등 법률서비스의 개선에 대한 개혁에 대한 응답비율이 낮은 편인 것을 감안하면, 연수원생들은 법조인의 구성과 구성원들의 의식개혁 등에 대한 개혁이 시급하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두 전직 대통령의 재판에 대한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대다수가 역사적 의미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치권의 결단에 의존한 독립적이지 못한 재판'이라는 의견이 62.2%를 차지해 사법의 독립성을 판단의 매우 중요한 요소로 파악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시민의 사법감시, 더욱 확대되어야

배심제, 참심제 등 시민의 사법참여에 대한 의견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33.3%, '부작용이 많으므로 차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34.7%를 차지해 매우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이에 비해 시민들의 사법감시 활동에 대해서는 89.3%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 사법에서 참여민주주의에 대한 긍정적 이해가 정착되어감을 느끼게 한다.

노인복지, 시혜가 아닌 권리

대법원, 노령수당지급제외처분취소청구소송 파기환송

참 여연대는 지난 1994년 12월 23일 이기남씨 (67세, 서울 관악구 신림6동)를 원고로, 생활 보호대상자 중 70세 이상 노인에게만 노령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보건복지부 장관 지침이 상위법인 노인복지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7조의 65세 규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위법한 지침에 근거하여 내려진 이기남씨의 노령수당지급 신청 기각결정을 취소할 것을 청구하였다.

95년 5월 4일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 재판부(재2특별부 재판장 유자담, 판사 이정보, 지대운)는 원고측의 주장인 위임입법의 한계는 “소득수준 등을 참작한 일정 소득이하의 대상자의 선정기준에 관한 것”이라는 주장을 배척하고 “소득수준” 등의 해석은 “국가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대상자의 최저 연령도 65세보다 높여 지급대상자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해석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해 96년 4월 12일 대법원은 정부예산의 필요로 전면적인 노령수당제도가 시행되기 전의 과도기적인 제한은 “대상자 선정기준(선별주의)”과 “지급수준”을 변경 시행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을 두어 이에 의해 해결할 수 있도록 법률상 보장하고 있으므로, 법령상 연령기준까지 상황조정할 필요를 예정하지 않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의 이 부분 해석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한 것이다.

이 판결은 생활보호대상자 노인 뿐만 아니라 노인복지 서비스 전반에 걸친 국가의 급여제도에 대한 헌문 제점을 인정한 것이며, 임의규정으로 되어있는 노인복지법 및 생활보호법 등의 법령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현행 사회복지 제도의 법과 시행령, 사업지침 간에 나타나고 있는 괴리와 모순에 대한 문제점을 인정하고 있는 판결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인지대까지 부담해 가며 이 사건의 소송대리를 맡아

고생해 가면서 승소를 이끌어 낸 이찬진 변호사를 만나 소송의 경과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들어보았다.

어떻게 소송을 제기하게 됐는지 ?

이 소송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가 ‘국민생활최저선확보운동’의 출범과 함께 제출한 공익소송의 하나였다. 노인복지법 제13조 조항 해당 시행령에 따르면 이기남 할아버지는 노령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청구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노령수당 지급 신청을 했는데, 구청은 지급 대상자가 아니라면서 접수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이것은 일종의 처분으로서 행정소송법상의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고 행정심판을 거쳐 노령수당 지급 제외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의 재판 과정은 ? 그리고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판결 차이는 어디에서 기인한다고 보는지 ?

첫째로 고등법원 재판에서 문제가 된 것은 이기남 할아버지가 당사자 자격을 가지고 있느냐, 즉 노령수당 지급 청구권을 가지고 있느냐에 관한 문제였다. 이에 대해 피고측인 구청은 노령수당 지급은 시혜적인 것으로 지급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우리는 노인복지법을 볼 때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당사자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당사자가 실질적인 노령수당 수급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본안 판단이 시작됐다. 통상 각종 행정청의 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권리 관계에 관한 처분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별로 없다. 그런데 노령수당 지급을 권리의무에 관한 처분으로 인정한 것은 하나의

선례가 될 수 있다. 두번째로는 65세 이상 70세까지의 당사자들에게 실질적인 권리가 있는지가 다뤄졌다. 법은 65세 이상이라는 일정한 기준을 제시했는데, 노인복지 사업 지침은 70세 이상에게만 주도록 축소했다. 바로 이 부분에서 문리 해석의 문제가 등장했다. 원고측은 이렇게 주장했다. "법률 뿐 아니라 시행령은 65세 이상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소득수준 등을 참작해 지급 대상과 요건을 정한다고 하고 있는데, 연령상의 제한은 65세 이상이고, 하위 규범이 그것을 제한할 근거는 없다. 따라서 노인복지 사업지침이 70세 이상으로 정한 것은 무효다. 그리고 노인복지 사업지침이 생활보호대상자에게만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겠다. 현행법상 다투 수 없다. 그런데 이기남 할아버지는 자활보호대상자로서 생활보호대상자이다. 따라서 요건은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노령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고등법원 재판부는 문리해석을 조금 넘어 위임 범위를 확대 해석했다. '소득수준 등'을 참작하라는 규정은 예산 수요나 여러가지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연령까지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면서 우리 주장을 배척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그것은 문리해석상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었다. 소득수준 '등'이라는 것은 소득수준과 상응하는 기타 사항이기 때문에 65세 이상이라는 법률상의 큰 틀을 하위규범에서는 '등' 하나 가지고 제한할 수 없다. 국어 교과서를 해석하는 양 조금 우습게 됐다.



행정소송의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 소송제도가 조금 유연하지 못하다. 주로 법률문제에 관해서만 다루기 때문에, 사회복지 관련 소송으로써 사회복지에 관한 입론을 세우고, 그것이 사법 판결에 반영되어 사회복지 분야에 관한 하나의 법이론으로써 정착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이번 재판에서도 아쉬운 점이다. 아무튼 결과적으로 이 판결로 인해 법률을 개정하지 않는 한 65세 이상 70세까지 노령수당을 지급해야만 하는 정책적인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은 사실이다.

현재 이번 소송과 같은 공익소송의 법적 접근을 하는 데에 어려운 점이 있다면 ?

작년 말 법무부에서 집단소송 제도 법안을 상정했는데 아직 통과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 발표된 것만 봤는데 제조물 책임, 즉 주로 소비자 문제를 다루고 있고, 사회복지 문제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사실 대표소송 제도 등이 제일 필요한 데는 사회복지 분야인 것 같다. 한 사람이 다뤄 받는 이익은 극히 미미하기 때문에 판결의 효력을 일반적인 효력으로까지 인정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그러한 제도가 있으면 판결이 곧바로 법령 개폐까지 이뤄낸다. 영미법계는 판례법 체계니까 당연히 그렇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시행령까지는 위법하다고 결정되면 그것은 곧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므로 굉장히 힘이 있다. 현재에는 민사, 형사, 행정, 가사로 구분하기 어려운 중간 영역이 굉장히 많다. 그러한 형태의 사회문제, 집단적인 사회문제를 처리할 집단소송 법제, 사법 제도들이 구축되어야 한다. 사회복지 부분에서는 반드시 필요하고, 영미법계에서는 그러한 소송이 차지하는 비율도 꽤 높다 (20~30%). 공익소송이 활성화되려면, 현행 제도의 한계, 개별적 처리 과정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집단적인 관점에서의 사법적 해결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

조금 우습게 됐다고 했는데 무슨 말인지 ?

노령수당의 성격이 무엇인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것인지, 노령수당제도가 사회복지제도 내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왜 필요한 것인지, 시혜가 아닌 법률상의 권리로써 인정되어야 하는 것인지 등이 쟁점으로 부각됐어야 했다. 그러한 부분에 관해서 우리나라

수원지검 329호실에서 짓밟힌 피의자 인권

민주주의 사회에서 범죄의 엄단과 사회질서를 지키는 검찰의 권능은 최종적으로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나 그 권한을 준 일반 국민들에게 검찰은 여전히 두려운 존재다. 최근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던 피의자가 검찰의 고압적 태도에 충격을 받고 자살한 일이 발생해 놀라움을 주고 있다. 지난 4월 24일 수원지검(담당 최정운 검사)에서 조사받던 63세의 조용환 씨가 담당 검사로부터 모욕을 받은 데 충격을 받고 5월 25일 자살한 것이다.

도와주었다가 오히려 피소당해

사건은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작년 1월 17일 밤 조용환씨의 뒷방에 사는 조일영씨(73세)가 조용환씨에게 찾아와 인근 목장에 복부(收夫)로 일하는 유종환이 쓰러져 있으니 도와달라는 부탁에 함께 가서 유종환씨를 조일영씨의 방에 눕혀놓고 돌아왔고 다음 날 아침 여전히 잘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는 유씨를 리어카에 실어 유씨가 있는 목장까지 데려다 주었다. 그런데 다음날 유씨의 부인이 조씨의 집에 찾아와 조씨가 어제밤 자신의 남편을 폭행했다고 주장했고 급기야 조씨를 폭행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사건을 맡은 광명경찰서는 조사 결과 조씨의 폭행혐의를 인정할수 없다고 사실상 수사를 종결했으나 유씨의 부인은 경찰이 편파수사를 했으며 조씨를 다시 수원지검에 고소했다. 조씨가 자살을 하기전에 담당변호사(진효근)에게 진술한 바에 의하면 4월 24일 1시 30분경 소환에 응했으나 무려 4시간 넘게 기다린 끝에 저녁 6시

경부터 밤 10시 반경까지 조사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최정운 검사가 자신에게 '앉으라 일어서라'며 기합을 주었으며 심지어 입을 다물라고 하더니 주먹으로 양쪽 뺨을 때리고 손가락을 피서 손끝으로 가슴을 찌르고 때렸다고 했다.

조씨는 '검사 최정운'이란 명패가 붙어 있는 책상 앞에서 조사를 받았으므로, 자신을 폭행한 사람이 검사라는 점을 확신한다고 했다.

사망 전 사실확인 요구하였으나 묵묵부답

사법감시센터에서는 이 사건에 관한 제보를 받고 곧 5월 13일 최정운 검사에게 이러한 조용환씨의 주장에 대한 사실확인을 요구하는 서한을 등기로 발송했으나 5월 23일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검사실로 전화를 해서 수령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5월 25일 조용환씨가 자살을 하였고 6월 3일 내용증명으로 사실확인을 제차 요구하자 10일 조용환씨의 주장

이 사실과 다르고 방문할 경우 답변하겠다는 내용의 답신이 팩스로 도착하였다. 사법감시센터에서는 13일 최정운 검사를 면담하였고 참고인으로 조용환씨와 함께 조사받은 조일영씨, 담당변호사 등을 만나 진상조사를 벌였다.

조일영씨는 검사가 조용환씨에게 '앉아! 일어서! 앉아! 일어서!'하며 기합을 주길래 '잘못 했으면 죄인을 벌하는 건 좋지만 왜 그러느냐. 나이가 예순 셋이나 되는 분을...'하면 제지를 하자 '영감, 나가!'라고 했으며 나중에 자신이 조사를 받을 때에도 조용환씨에게와 마찬가지로 기합을 주려 하길래 '난 안해, 죽으면 죽었지 난 안해. 내가 왜 도와주고도 당신에게 그런 소리 들어. 난 안해.'라며 거부했다 한다. 이러한 조일영씨의 진술은 녹음테이프에 보관되어 있다.

또한 조용환씨의 아들 희택씨와 부인 김정희씨(61세)에 의하면 조희택씨가 검찰 조사를 받은 다음날부터 아무 것도 먹지 않고 술만 찾으며 가끔씩은 한숨을 짓기도 했다고 한다. 며칠 뒤 이상한 생각이 들어 까닭을 물었더니 "내가 평생 경찰서에 한 번 안 가보고 살았는데 어쩌다 좋은 일 해주고 이렇게 검찰청에까지 불려가 아들뻘 되는 검사에게 이제껏 저새끼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야겠느냐"고 했다고 한다. 검찰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물었더니 "젊은 검사가 유씨를 폭행했느냐고 물어 아니라고 했더니 왜 거짓말하느냐"며 손으로 어깨를 내리치고 입을



다물라고 하면서 빵을 세계 치기도 했다. 국민학생처럼 무릎 꿇고 손을 들라고 하면서 벌을 주기도 했다. 손을 펴서 가슴을 찌르기도 했다. 더 이상 창피해서 말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조씨가 자살하기 전날 마지막으로 얘기를 나누는 마을 주민도 조씨가 “좋은 일 해주고도 아들뻘 되는 검사에게 욕설을 듣고 배까지 얻어 맞았다. 심경이 괴롭다.”는 말을 남겼다고 한다.

“꿨어얌인 것이 잘못이려면 인정한다”

이러한 주장과 달리 최정운 검사는 조용환씨의 조사과정에서 언쟁이 있었고 조사에 순순히 응하지 않고 저항을 하길래 꿨어얌이라고 했더니 조씨가 순순히 꿨어얌이라고 외외의 다른 폭력 행사는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혐의가 어떠한지 간에 조용환씨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한 시민이었고 검사는, 그에게 무릎을 꿇리고 앉고 서고를 반복하는 벌을 주는 등의 가혹행위를 한 것은 담당검사 자신의 시인으로 명백해졌다. 그것은 단순히 검사의 의욕과잉이나 직무수행상의 사소한 실수에 그치지 않고 형사소송법이 금지하는 위법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이와 같이 4월 24일 수원지검 329호실에서 시민의 인권은 처참하게 짓밟혔다. 권위주의적이고 폭력적인 검찰의 수사행태를 여실히 드러내 주고 있다. 조용환씨가 고인이 된 지금 그 죽음을 되살려 낼 수는 없지만 문제가 된 담당검사의 엄중한 징계, 전국 검사와 수사 관계자의 재교육 등을 통한 재발의 방지 노력이 있어야 한다. 그럼으로써 검찰이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고 국민이 보호받을 의지처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기소중지 수배에 대한 엄치없는 발뺌

대방동에 사는 이순자씨는 6월 3일 아주 황당한 일을 당했다.

아날 이순자씨는 12시 20분 경 직장인 남인천전화국으로 찾아온 성남남부경찰서 중부경찰서 소속 심인호 순경에 의해 가출 및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중지상태라고 하며 연행을 당했던 것이다. 이씨는 인천 간석 1동 파출소로 갔다가 인천 남부경찰서 형사관리계로 다시 옮겨져 보호실에 갇히게 되었다. 3시 20분 경 놀래 달려온 남편과 함께 전혀 사실무근임을 주장하였으나 남부경찰서에서는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수배가 내려졌기 때문에 자신들은 보호만 할 뿐 어쩔 수 없다는 얘기였다.

다행히 인천 남부서에서 기소중지자 명단을 확인해 본 결과 이순자씨와 주민등록번호 앞자리가 같은 다른 사람이 있었고, 이씨의 주소가 강남구 신사동으로 다른 동명이인과 같이 입력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남부경찰서에서는 강남서에 수차례 확인전화를 했고 결국 4시 20분 경 이씨를 풀어주고 강남서에 가서 기록을 확인하고 해제시켜야만 한다고 알려주었다.

이씨 부부는 오후 6시 10분 경 모든 사건의 근원지인 강남서에 도착했다. 그런데 이들은 여기에서 더 큰 수모를 당해야만 했다. 강남서에서는 이순자씨에 대한 기소중지 수배를 내린 적이 없다는 것이었다. 게다가 강남서 순경들이 항의하는 이씨 부부에게 폭언까지 하면서 확인해 달라는 이씨 부부의 제안을 묵살해 버린 것이었다.

이후 경유해 온 경찰서 등에 재차 확인해 본 결과 강남서에서 수배를 내린 것이고 부정수표단속법에 대한 기소중지 기록은 지워졌으나 가출인 기록은 아직도 남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씨 부부는 행정착오가 있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착오에 대해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사정하는 경찰의 자세를 너무도 아쉬워하고 있다. 무고하게 주민등록번호 앞자리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에서 연행되어 보호소에서 수모를 겪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기관이 아무 곳도 없다는 것이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참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한다. 이씨 부부는 당분간 그날의 기억과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을 씻을 수 없을 것이다.

남부지원 스케치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3가 76-5. 전국의 법원청사 중 가장 주변환경이 열악하기로 유명한 남부지원. 1971년 12월 30일 신축, 1992년에 증축하였다지만 여전히 비좁고 복직댄다. 남부지원은 문래동의 공장지대로 둘러싸여 있다. 뒷문은 아파트 단지와 맞닿아 있고 법원 사이를 가로지르는 각종 배달원들의 모습도 자주 눈에 뜨인다. 그러나 이런 조건만이 '열악한 법원 환경'을 구성하는 것은 아닌 듯하다.

눈·비 걱정을 하게 하는 법정



남부지원에는 6개의 법정이 있다. 5호법정은 신관의 뒷편에 붙어있고 나머지 1-4, 6호법정은 본관에 붙어 있다. 전체적

으로 청사가 낡았을 뿐더러 5개의 법정 앞에는 13개의 낡은 나무벤치의자만 있을 뿐이다. 방청을 하러 오거나 재판관계자를 만나러 오는 사람들로서는 눈·비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비가 오면 가릴만한 지붕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의자를 들여놓을 공간마저 남부지원에는 어디를 보아도 마땅하게 없다. 처음부터 민원인에 대한 고려 없이 이어진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었다.

기자는 재판공지관에 6월 4일 2호법정에서 있는 오전재판의 건수가 143건이나 되는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자세히 살펴보니 소액전담재판부였다(민사 33단독). 잠시 법정에 들어가 보니 자그마치 16명의 사람이 재판장 앞에 죽 서 있었다. 도대체 어떤 사건이기에 원고, 피고가 그만큼 되는지 지켜보니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되지 않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불러 재판장이 주소보정 방법 등에 관하여 열심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었다. 재판장이 한 번 얘기한 원고에게 재차 질문을 하여 확인을 하기도 하는 광경은 법원청사의 열악한 외부적 환경에 대한 언급을 무색케 했다. 경제적이기는 하였지만 불려나갔던 사람들이 우루루 밖으로 몰려나와 정리에게 재차 질문을 하기도 하고 서로 우왕좌왕하는 사람도 꽤 있었다. 사건 처리의 경이로운 숫자가 소액전담 재판부만의 특징은 아니었다.

6월 4일과 12일 남부지원에서 다루어진 사건의 수

6월 4일

2호법정 소액전담 민사33단독	1호법정 형사1단독	3호법정 민사11단독
9:30 62건	오전 41건(이 중 선고24)	오전 52건(이 중 선고4)
10:00 59건	오후 31건	오후 12건
11:00 20건	총 72건	총 64건
2:00 17건		4호법정 민사2단독
3:00 16건		오전 63건(이 중 선고14)
총 176건		총 63건

6월 12일

1호법정 형사3단독	3호법정 민사합의5부	2호법정 민사12단독
오전 85건(이 중 선고48)	오전 33건(이 중 선고10)	오전 39건(이 중 선고3)
오후 40건	오후 17건	오후 10건
총 125건	총 50건	총 49건

를 세어보았다.

오전재판 수가 100건을 넘었다

기자가 남부지원을 찾은 이틀이 공교롭게도 다른 날에 비해 재판이 많은 것인지, 아니면 일상적인 일로서 다른 지원에서도 공통적으로 있는 현상인지 이틀만의 평가로 알 수는 없다. 재판과 소환의 시간대가 나누어져 있기는 하였지만 오전 재판만 143건에 이르고 사건당 원고와 피고가 1인씩만 법원을 찾았다고 해도 200명이 넘는 숫자에 이른다. 재판정의 방청석이 2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법정 밖의 의자 수는 턱없이 모자라 자기 사건을 기다리는 당사자들이나 방청객들이 앉아 술 자리는 없었다.

법관의 격무, 가히 놀랄 만한 것이다. 법관의 과로가 걱정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격무 속에서 당사자들에게 성실한 판결로서 답할 수 있을는지, 그것이 더욱 큰 문제로 돌아오는 기자의 머리를 짓눌렀다.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인정되어야 한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지난 4월 25일 헌법재판소, 대법원, 법무부, 법원행정처 등에 다음과 같은 서한을 발송하였다.

4월 9일 양도소득세 세액산정에 대해 대법원이 판결을 하면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의 법적 효력을 정면으로 부정하면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관계 문제가 심각성을 드러내 보였다. 이 사건은 단순히 양도소득세 세액산정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에 대해 대법원이 일종의 공격을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을 낳았다. 그것은 종래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의 권한에 대해 시비를 걸어 마찰이 적지 않았고, 현재 법원의 판결을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으로 할 것이냐가 바로 헌법재판소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문을 증폭시킨다.

법학계에서는 법원의 판결도 국가권력의 하나인 사법권력의 작용이기 때문에 국가권력을 만들어 낸 헌법에 기속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법조 실무계에서도 의견이 나누어져 있지만 반대론의 경우도 4심이 된다는 것을 이유로 반대하는 것 이외에는 이런 헌법원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견해를 찾기 어렵다.

우리 나라의 헌법소원제도는 1987년 국민의 민주화 투쟁에 의해 얻어낸 1987년 헌법에 의해 인정된 것이다. 이 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철저히 보장하기 위하여 기존의 통상의 권리구제 절차를 밟았으나 구제를 받지 못했을 때 마지막으로 기본권 구제를 구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단순한 필요성을 넘어 철저히 현대 압헌 민주국가의 원리에 의해 인정되는 제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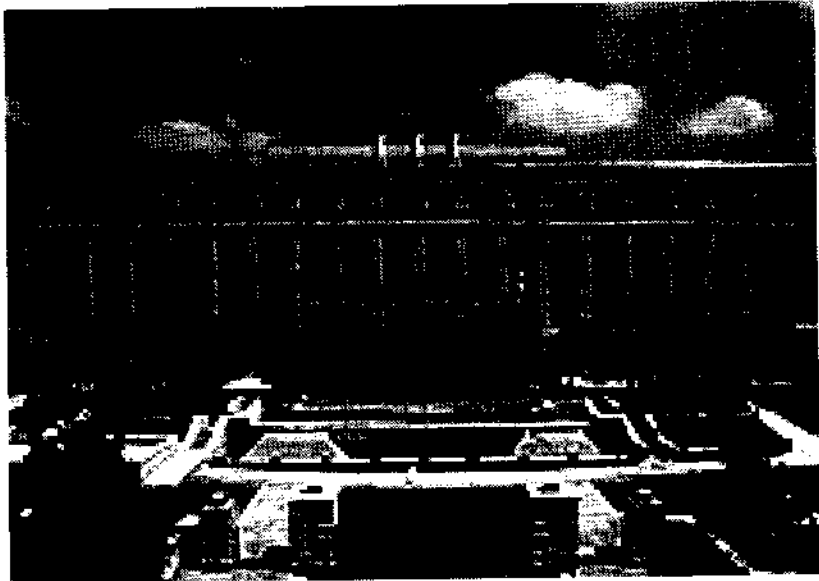
이 제도를 법제화하는 과정에서 헌법소원의 대상에는 당연히 모든 국가의 공권력의 행사와 불행사가 포함됨에도, 당시 법원의 집요한 로비에 의해 매우 어색하게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이를 제외하는 규정을 두었다. 그 결과 실제로 우리의 헌법소원은 매우 한정된 영역에서만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기능만 하게 되었다. 즉 국민은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우 어떤 경우에도 기본권을 구제받아야 하는데,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에서 제외됨으로 인하여 거의 대부분은 법원의 재판을 받는 것으로 끝을 맺어야 했다. 그 결과 겨우 헌법소원이 국민의 기본권 구제 수단으로 작동하는 것은 흔치 않은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과 감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정도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체험을 하였듯이 법원의 재판이 재판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아무리 타 국가권력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 경우라도 법원이 그런 침해가 없다고 하면 더 이상 국민은 호소할 데가 없었다. 입법작용, 행정작용 등 모든 국가권력이 그렇듯이 국가권력의 일차적 임무는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고 실현시키는 것이지만, 언제나 표면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 그래서 입법작용, 행정작용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그 구제수단을 두고 있다. 이 점은 법원의 재판도 마찬가지이다. 법원의 재판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아니라, 국회나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실현시키는 하나의 국가기관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법원의 재판에 의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할 위험성은 상존하고 있다. 과거 법원의 재판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제대로 구제 받지 못한 경우 국민은 법정에서 판사를 비난하거나 재판받기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항거하였으나, 오히려 국민은 더한 피해를 보았다. 바로 이런 재판의 이름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피해를 구제하는 것이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다.

국민이 주권자의 지위에서 헌법을 제정하고, 이런 헌법이 국가법질서의 최상위에 있는 한, 법원의 재판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재판하는 것은 국민의 주권자적인 지위에서 나오는 당연한 요청이다. 현대 입헌민주국

가에서는 어떠한 권력도 국민이 합의한 문서인 헌법으로부터 벗어나 제멋대로 행사될 수 없다. 모든 국가 권력은 국민의 의사인 헌법의 틀안에서 행사되는 것이다. 국민의 대표자가 만든 법률조차도 이런 원칙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법원의 재판이 이런 통제에서 벗어나 있겠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설명이 불가능한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시민 감시운동을 해오고 있다. 이런 시민의 감시는 법원의 재판절차상의 잘못을 시정하고, 판사의 잘못된 언행을 통제하는 것으로는 약간의 효과를 얻을 수도 있었으나 헌법에 위반하여 내린 판결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으로 있을 밖에 없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에서 이런 무풍지대가 생긴 것은 법원의 재판이 헌법의 통제 밖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었다. 국민들은 그간 헌법재판이 국민에게 얼마만한 이득을 가져다 줄 것인지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도 벌써 9년째 헌법재판을 해오면서 국민들은 자기의 권리와 자유를 찾는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들의 정당한 몫을 찾기 위해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법원도 나라의 주인인 국민에 대해서는 공복으로서의 지위에 있다. 국민은 주권자의 지위에 있고, 법원은 어디까지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고 실현시키는 것에서만 존재 의의를 가진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의 어디에도 없다.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또하나의 재판을 하는 것이라고 법원은 반대하지만, 헌법재판소가 법원이 하는 재판을 다시 하는 것은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로지 법원의 재판이 재판이라는 이름 하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지 않나 하는 것만 심판하는 것이다. 그것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수호기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이고 사명이다.

헌법재판소의 활동이 눈부신 효과를 거두고 있는 듯

일의 경우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곧바로 4심이 되어 부작용을 빚는 일은 거의 없다.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자기의 권한과 역할을 잘 알아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몫만 열심히 한 결과 헌법재판을 성공시켰다. 국가의 권력의 분립과 분립된 권력의 기능은 기관 이기주의에 따라 제멋대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의 원리, 국가작용의 원리에 따르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어느 한편을 드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주권자인 국민의 편에서, 주인된 입장에서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국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권으로 주장하는 것이며, 국가가 제대로 기능을 하여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할 권리를 부정하는 것은 국민의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고, 입헌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법원은 더이상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자세에서 벗어나 겸허하게 헌법 아래에서 국민의 공복으로 자기의 역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법원의 재판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사실이 들어날 것을 막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열심히 재판하는 것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제대로 재판한다면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두려워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없는데 무엇 때문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두려워 하겠는가.

1996. 4. 25

김석원 실명확인업무 방해혐의에 대한 엄정수사 요청서한

우리 국민들은 폭로되는 두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의 액수가 늘어감에 따라 하루가 다르게 커져만 가는 충격과 허탈감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바로 그 비자금의 조성에 많은 재벌 총수들이 연관이되어 있음을 알고 큰 분노를 함께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들은 국민경제에 바쳐져야 할 막대한 돈을 두 전직 대통령에게 뇌물로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검은돈을 실명화하고 보관해 주기까지 했다는 사실은 단순히 도덕성의 상실을 넘어서 실정법적인 범죄행위에 다름아니었던 것입니다.

특히 전 쌍용그룹 회장 김석원씨는 뇌물로 조성된 전두환씨의 비자금 총 143억 5천여 만원을 불법실명전환하여 현금으로 바꾸어 자신의 집에서까지 보관하면서 전두환씨의 요구에 따라 현금화 해주었음이 이미 언론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국가 경제발전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조치인 금융실명제 실시의 의미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당시 재벌의 총수가 불법실명전환에 가담하였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그 사회적 책임을 물어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지방검찰청은 지난 1월 24일 돈을 넣은 사과상자 25개를 검찰이 이미 압수한 상황에서 3개월이나 발표를 미루다가 4월 15일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전두환씨 비자금 사건 2차 공판에서 이 사실을 공개하였던 것입니다. 검찰의 이러한 발표시기의 고의적인 지연은 4.11 총선을 염두에 둔 행위로서 통합선거법 제86조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조항의 위반이 아니었는가 하는 의혹조차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검찰은 위와같은 김석원씨의 행위가 명백한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쌍용 측이 불법실명전환 과정에서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석원씨를

조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가를 받았는지는 조사를 해 봐야 할 일이고 유형무형의 어떠한 대가라도 받았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 국민의 믿음이기도 합니다. 또한 김석원씨에 대해 검찰이 자체적으로 조사하지 않은 것은 지난해 11월 노태우씨 비자금 변칙실명전환 행위로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은 (주)대우 이경훈 전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던 것과 상당히 형평성을 잃은 조치로, 신한국당 후보로 출마한 김석원씨에 대한 뇌주기 수사라는 의혹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하여 참여연대 회원 김정자(55세, 강남구 청담동)씨 외 2인은 검찰이 본연의 자세를 되찾고 두 전직 대통령까지 기소하였듯이 수사대상의 지위고하와 무관하게 엄정하고도 면밀한 수사에 착수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지난 4월 19일 쌍용그룹회장 김석원씨를 금융기관의 실명확인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고발후 한동안 고발인조사까지 하지 않아 지난 4월 30일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 앞으로 신속하고도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최근 우리는 이 사건의 담당검사가 바로 홍만표검사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발한 지 이미 2개



김석원 실명확인업무 방해혐의에 대한 엄정수사 요청서한

우리 국민들은 폭로되는 두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의 액수가 늘어감에 따라 하루가 다르게 커져만 가는 충격과 허탈감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바로 그 비자금의 조성에 많은 재벌 총수들이 연관되어 있음을 알고 큰 분노를 함께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들은 국민경제에 바쳐져야 할 막대한 돈을 두 전직 대통령에게 뇌물로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검은돈을 실명화하고 보관해 주기까지 했다는 사실은 단순히 도덕성의 상실을 넘어서 실정법적인 범죄행위에 다름아니었던 것입니다.

특히 전 쌍용그룹 회장 김석원씨는 뇌물로 조성된 전두환씨의 비자금 총 143억 5천여 만원을 불법실명전환하여 현금으로 바꾸어 자신의 집에서까지 보관하면서 전두환씨의 요구에 따라 현금화 해주었음이 이미 언론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국가 경제발전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조치인 금융실명제 실시의 의미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당시 재벌의 총수가 불법실명전환에 가담하였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그 사회적 책임을 물어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지방검찰청은 지난 1월 24일 돈을 넣은 사과상자 25개를 검찰이 이미 압수한 상황에서 3개월이나 발표를 미루다가 4월 15일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전두환씨 비자금 사건 2차 공판에서 이 사실을 공개하였던 것입니다. 검찰의 이러한 발표시기의 고의적인 지연은 4.11 총선을 염두에 둔 행위로서 통합선거법 제86조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조항의 위반이 아니었는가 하는 의혹조차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검찰은 위와같은 김석원씨의 행위가 명백한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쌍용 측이 불법실명전환 과정에서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석원씨를

조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가를 받았는지는 조사를 해 봐야 할 일이고 유형무형의 어떠한 대가라도 받았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 국민의 믿음이기도 합니다. 또한 김석원씨에 대해 검찰이 자체적으로 조사하지 않은 것은 지난해 11월 노태우씨 비자금 변칙실명전환 행위로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은 (주)대우 이경훈 전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던 것과 상당히 형평성을 잃은 조치로, 신한국당 후보로 출마한 김석원씨에 대한 봐주기 수사라는 의혹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하여 참여연대 회원 김정자(55세, 강남구 청담동)씨 외 2인은 검찰이 본연의 자세를 되찾고 두 전직 대통령까지 기소하였듯이 수사대상의 지위고하와 무관하게 엄정하고도 면밀한 수사에 착수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지난 4월 19일 쌍용그룹회장 김석원씨를 금융기관의 실명확인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고발후 한동안 고발인조사까지 하지 않아 지난 4월 30일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 앞으로 신속하고도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최근 우리는 이 사건의 담당검사가 바로 홍만표검사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발한 지 이미 2개





월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 홍검사님은 고발인 조사조차 수행하지 않고 있으니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것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국민들의 의혹이 쌓이고 있고 만약 그 혐의가 그대로 인정되면 기소와 유죄판결을 면치 못할 중대한 사건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실현을 염원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사실을 평범한 시민들에 불과한 고발인들은 믿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진정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지위가 높고, 권력이 있으며, 돈이 많은 피고발인과 같은 사회도층이 예외없이 처벌된다는 교훈을 우리 사회에 심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국민의 공복이 된 김석

원씨에 대해서도 예외없는 법치주의의 촘촘한 잣대로 관련행위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을 담당하신 홍만표 검사님께 사회정의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엄정한 수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고발인 조사와 아울러 피고발인에 대한 엄정하고도 조속한 수사를 재차 촉구하는 바입니다.

1996. 6. 12.

그후 위의 서한에 대하여 6월 14일 홍만표 검사로부터 아주 진지하고 성의있는 전화답신을 받았다. 홍검사는 이 사건에 대해 이미 계열사 관계자의 소환 조사가 실시되는 중이며 김석원씨도 곧 소환조사할 예정이라는 것을 밝혔다. 또한 고발인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추가로 고발인조사를 할 내용이 없어서이며 전두환씨의 비자금의 추정보전 등 많은 업무로 인하여 빠른 수사를 진행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7월 중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갈 방침이라는 의사를 전해 왔다.

홍만표 검사는 KBS에 이 사건과 관련된 방영이 취소되는 등 언론에 대한 쌍용측의 외압이 적용하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검찰은 수사에 있어 외압에 따른 은폐가 전혀 없으며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한 점의 의혹이 없기를 바란다며 말했다. 역사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는 젊은 검사로서 성실하고 책임있게 수사에 임하겠다는 말과 함께.

알림

정종섭 교수 출판기념회

정종섭 교수(건국대 법학)의 꾸준한 연구적업결과로 [헌법연구(2)- 국가개혁과 헌법정책 (철학과 현실사)]를 비롯한 세권의 책이 어려운 앞에 선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 행사의 모든 수익금은 참여연대의 재정으로 쓰여질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참석하시어 정교수의 노작 출판을 축하해 주시고 활력 넘치는 시민단체로 참여연대가 커나가는 데에 보탬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 시 : 1996년 7월 9일 (화) 오후 6시 30분
장 소 : 서울지방변호사회 대회의실
참가비 : 6만원 (출판도서 포함)

출판기념회에 선보일 책들

- 헌법연구 (1) - 대의 민주주의의 형성과 원리(1994년간)
- 헌법연구 (2) - 국가 개혁과 헌법정책 (1996년간)
- 헌법재판연구 (1) (1995년간)

한시간 동안 느낀 검찰의 권위주의

박원석(서울시 중구 약수동)

돌 이켜보니 지금까지 모두 여섯번의 검찰청 출입이 있었다. 그중 네번은 학생시절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러 갔던 것이며, 나머지 두번은 자의에 따라 고발인 자격으로 출입한 것이었다. 검찰청을 출입하는 사람들 대개가 그렇겠지만 나역시 어느 한번도 유쾌한 기억은 없었다. 특히 가장 최근인 지난 6월 13일 서울지검 의정부 지청에서의 한 시간은 더더욱 그랬다.

지난 6월 13일 오전 11시경 나는 신한국당 구리지구당 전용원 의원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기 위해 의정부 지청에 갔다. 청사 3층 민원검사실에 고발장을 접수시키러 갔지만 담당 직원이 '담당 검사실로 직접가야 한다'고 해서 바로 맞은편인 325호 김태영 검사실로 들어갔다. 용무를 밝히고 잠시 대기한 후 고발장이 검사앞으로 전달되었을때 나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말을 들었다. 대뜸 던진 검사의 일성인즉 "임선옥이와 상의 했나요, 임선옥이 곧 무고죄로 기소될텐데 그래도 괜찮아요? 다시한 번 잘 생각해보고 오세요" 였다. 여기서 잠깐 전후관계를 설명하자면, 임선옥씨는 같은 고발인이며 이날 동행하지는 않았다. 임선옥씨는 선

거 직후 양심선언을 통해 신한국당 후보의 부정사실을 폭로했고, 그 댓가로 신한국당측에 의해 명예훼손으로 고발된 상태이며 바로 그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았다. 한편 전용원의원 또한 선거운동원이 돈 봉투를 돌리던 현장에서 적발.구속되어 검찰에서 인지사건으로 조사중이었다. 난 순간적으로 내 귀를 의심할 수 밖에 없었다. '아니 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임선옥씨가 무고라니 그것도 곧 기소할 것이라니 그렇다면, 이미 전용원의원에 대해서는 무혐의 확증을 갖고 있다는 말인가' 나는 "충분히 상의했고 임선옥씨도 동의했다"고 답했다. 그러자 검사는 다시 한번 "임선옥은 명예훼손으로 고발되어 곧 기소될 것"이고 "고발이 불리하게 작용할 지도 모른다"는 다소 위협적인 말을 한후 계장에게 "임선옥이에게 전화해서 확인해보라"고 했다.

나는 그순간 여러가지 생각을 했다. '무고라는 검사의 표현이 단지 실수일까, 혹시 검사는 이 사건을 더이상 조사할 뜻이 없다는 것일까, 또한 나는 죄인도 아니고, 고발인으로 온 것인데 왜 이렇게 위압적인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아무리 피의자라지만 "임선옥이"라고 함부로 불러도 되는 건지', 위압

적이기는 임선옥씨에게 전화를 거는 직원의 태도도 마찬가지 였다. 고발장의 내용이 사실이고 동의하는 것인지 묻는 말로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중간중간에 나온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나중에 다른말 하지 말라" 등의 언사는 내가 듣기에도 위협에 가까운 것이었다. 하물며 양심선언을 했고 그로인해 고발된 임선옥씨의 처지에서는 어 떠했겠는가. 그뒤로도 1층 민원실과 3층 검사실을 몇차례 오르내린 끝에 고발을 접수시켰고, 놔두고 돌아가라는 것을 사양하고 나는 접수증까지 받고서야 의정부 지청을 나왔다.

평소 나는 검찰에 대해 분명 선입견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내 선입견의 실체는 그동안 외부로부터 형성된 '정치적인 것' 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번 경험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검찰 문제점을 훨씬더 가까이서 보게된 계기였다. 검찰은 여전히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너무도 막막한 벽이며 무서운 권위이다.

돌아오는 길에 '내가 만약 임선옥씨와 같은 평범한 개인으로, 그것도 피의자로 간 것이었다면 어 떠 했을까' 하는 생각이 내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어디로 가고 있는가?

헌법재판소 1995. 11. 30선고, 94헌바40, 95헌바13(병합)결정과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누11405 판결을 읽고

김선택 (고려대 법대 교수)

헌 법재판소는 작년 11월 30일, 양도소득세액산정에 있어 기준시가를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도록 한 구소득세법조항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경우를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세액이 기준시가에 의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까지를 포함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른바 한정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반하여 대법원(제1부)은 지난 4월 9일, 기준시가에 의하면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과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부과된 양도소득세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상고사건에서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의미·내용과 적용범위가 어떠한 것인지를 정하는 권한은 전적으로 대법원을 최고 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전속하는 것”이므로 “한정위헌결정에 표현되어 있는 현재의 법률해석에 관한 견해는 법률의 의미·내용과 그 적용범위에 관한 현재의 견해를 일용 표명한 데 불과하여 이와 같이 법원에 전속되어 있는 법령의 해석·적용권한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치거나 구속력도 가질 수 없다”고 하면서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는 종래 헌재가 한정위헌결정을 일부위헌결정으로서 위헌결정의 일종이라고 보아 한정위헌결정에서 위헌적인 것으로 배제된 해석 가능성 또는 축소된 적용범위의 판단은 단지 법률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부분적 위헌선언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서 그 내용을 결정 주문에 포함하는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17조에 정한 위헌결정의 구속력이 미쳐서 한정위헌결정이 법원 기타 국가기관을 구속한다고 본 견해에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다.

헌재의 위 견해는 위와 같이 대법원이 한정위헌결정의 구속력을 부인하고 또 하급법원이 그러한 대법원판결의 취지에 따라 재판할 게 될 경우 아무런 실제적 의의를 가지지 못하게 되고 헌재의 권위와 위상이 흔들리지 않을 수 없다. 마침 헌재는 4년씩이나 미뤄 온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을 공개변론에 부침으로써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헌재법 제68조 1항의 위헌여부를 심리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대법원의 판결도 헌법재판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싸인을 보내고 있

던 참이었다. 이로써 1987년 헌법 개정을 통하여 헌재가 도입되어 사법의 머리가 이원화된 이래 단속적으로 계속되어 온 대법원과 헌재의 권한갈등이 다시 한 번 첨예하게 드러나고 말았다. 이 문제에 대한 양기관의 권한갈등을 해소할 방안을 살펴보자.

대법원의 현재 구속력 배척, 타당하지 않다.

첫째, 대법원이 현재의 한정위헌결정을 법률해석에 관한 견해를 표명한다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고 구속력을 배척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 물론 헌재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사실관계의 인정과 평가 및 당해사건에 적용한 단순한 일반 법규의 해석·적용의 문제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의 전속적 권한으로서 원칙적으로 헌재의 심판 사항이 아니다. 그러나 단순한 일반 법규의 해석권한이 법원에 전속하여 있다 하더라도 법원에 의하여 해석된 법률의 의미내용이 헌법의 종국적 해석권한이 있는 헌재에 의하여 해석된 헌법조문의 의미내용과 합치되는 지 여부는 헌재의 심판사항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헌재, 결정내용의 논리적 우수성이 의존해야

둘째, 시가의 단기급등으로 인하여 기준시가가 현실의 시가를 반영하지 못하여 투기거래자의 막대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실질에 부합하는 과세를 못할 경우 과세의 형평을 해칠 수 있다는 점도 대통령령으로 기준시가과세원칙의 예외로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과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토록 한 입법 목적의 하나임을 상기한다면, 헌재가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보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가 납세자에게 유리한 경우만을 한정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라고 본 결정내용은 구체적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불과 2년 미만의 기간에 4억여원, 2월 남짓의 기간에 6억원의 양도차익이 발생

한 사안에서 헌재의 한정위헌결정대로 기준시가에 따른 경우 양도소득세부과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심히 부당한 일이라는 점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헌재는 대법원이 종전까지와는 달리 이 사안에서 왜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하는데 이르게 되었는지를 검혀하게 재고하여, 법적인 기속력에 의존하여서 보다는 결정내용의 타당성과 논리적 우수성으로 법원이나 다른 법 적용기관의 존경을 얻을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셋째, 헌재가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판소원을 인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인가? 도대체 재판소원이 현행법 하에서 가능하겠는가? 문제가 된 위 대법원판결의 당사자는 대리인 변호사를 통하여 지난 5월 10일 법원의 판결도 헌재에서 심판하여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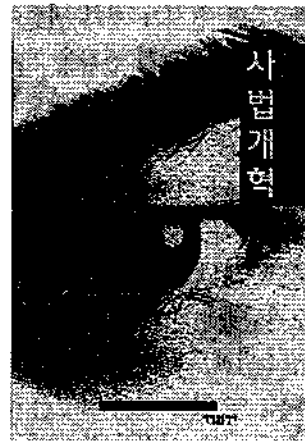
하며 대법원이 헌재의 한정위헌결정에 따르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법원의 재판을 명시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배제한 헌재법 제68조 1항과 당해 대법원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헌재에 청구하였다. 여기에는 두가지 문제가 함축되어 있는데 헌재법 제68조 1항의 헌법위반 여부문제와 그에 관한 헌재의 결정권한 여부 문제이다.

헌재법 제68조 1항의 헌법적 근거인 헌법 제111조 1항 5호는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이라는 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조문에서 두 가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데, 하나는 법률에 정하도록 하였으므로 헌법소원의 구체적인 형성은 입법자인 국회에 맡겨져 있다는 점(이른바 입법위임)이고, 다른 하나는 헌법 스스로 헌법소원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의 공동연구진이 사법100주년을 맞아 국민과 함께 하는 사법의 위상을 찾고자 만든 책입니다. 연구진은 이 책에서 사법구조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헤치고, 외국의 사례를 풍부하게 들고자 노력했습니다. 쟁점마다 좌담회를 개최하여 각계의 폭넓은 의견을 청취, 수렴하였고, 그 결과를 모아 분명한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사법감시센터 지음
 참여필진 : 김제완(변호사), 박원순(변호사), 박은정(이화여대 법학과 교수),
 이창원(조선일보 사회부 기자), 차병직(변호사),
 한인섭(서울대 법학과 교수), 황승흠(서울대 법학과 박사수료)



• 박영를 출판사 발행 / 264쪽 / 값 9,500원 • 문의 전화 : 02-3673-4462, 팩스 : 02-3672-2478



을 하나의 제도로서 인정하고 있으므로 입법자가 구체화입법을 함에 있어서도 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손상시켜서는 안된다는 점(이른바 제도적 보장)이다.

또한 헌재법 제68조 1항이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현재의 헌법소원심판권한의 행사범위를 제한한 것이 되고 결국 현재의 권한범위를 법률상 그렇게 규정한 것이 된다. 따라서 헌재가 이 규정에 대한 심판권한을 행사하여 만약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이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할 경우 이는 자기 권한을 스스로 확장하는 일이 될 것이다. 과연 헌재가 자기 권한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헌재법 제68조 1항은 헌법(제111조)에 규정된 현재의 관장사항 중의 하나인 헌법소원을 구체화한 것이고 따라서 당해 헌법 조항(동조 제1항 제5호)에 전제된 헌법소원심판권한의 실질적 범위는 헌법소원제도에 관한 해석을 통하여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경우에는 앞에 제기된 문제를 어떻게 해

결하느냐에 따라 대답이 달라지게 될 것이다.

넷째, 위의 현행법 해석론과는 별도로 입법정책론적 견지에서 재판소원이 법률개정을 통하여 명확히 도입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문제가 있다. 기본권 보장과 헌법수호가 헌재만의 임무인 것은 아니고 모든 법원의 임무이기도 하다는 점은 물론이지만, 법원사법권도 국가공권력행사의 일환이고 예외적인 경우겠지만 만약에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때에는 현재의 심사를 받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우리나라처럼 헌재와 대법원이 사법의 두 머리로서 각기 헌법을 해석할 가능성이 열려 있는 곳에서는 헌법의 통일적 해석, 나아가 법질서의 통일적 운용 및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데도 재판소원이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특히 「헌법적 문제」에 대한 헌법합치성 심사가 헌법재판소의 임무이고 「일반적인 법률문제」는 법원이 관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능을 나눔으로써 두 기관의 활동영역이 분리되고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판결을 또한 심판하는 제4심이 되지는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헌재의 인적구성 방법 개선이야

다섯째, 헌재와 대법원이라는 두 개의 머리를 엮고 있는 현재의 사법조직하에서 두 기관 사이의 갈등을 해소할 아마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현재의 인적구성방법을 개선하여 양기관을 견인할 인적유대관계에 놓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참고로 우리 헌법재판제도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의 경우를 살펴보면, 헌재 출범시부터 연방대법원과 연방헌재 두 개의 최고법원을 인적구성에 있어서 긴밀하게 결합하여 왔다. 처음에는 2개의 부로 구성된 연방헌재의 각 부를 구성하는 재판관 중 4명을 연방대법원 대법관 중에서 대법관재직 기간 동안 선임하도록 연방헌재법에 규정하였고, 실제로 1951년 연방헌재 재판관을 처음 임용할 당시 선출재판관 8명 중 7명을 일반 민형사사건을 담당하는 연방대법원 대법관 중에서 선임하였다. 그들은 대법관직과 헌재재판관직을 동시에 수행하였고, 두 직무수행의무가 충돌하는 경우 연방헌재의 지위와 그 임무의 중요성 때문에 헌재재판관 직이 우선하였고 봉급도 헌재재판관 봉급을 수령하였다. 논란이 많았던 이러한 이중적인 법관활동은 1961년 연방최고법원의 법관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는 그가 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인 동안에는 정지한다는 내용의 법관법개정으로 막을 내리게 되었다.

그 동안 독일의 연방헌재 재판관의 숫자는 각 부마다 12명에서 8명까지로 줄었지만 연방법관 가운데서 선임해야 할 숫자는 각 부별 3명으로 고정되어 왔다. 현재 연방헌재는 2개의 부로 구성되고 각 부마다 8명의 재판관이 선임되는데 각 부의 3명의 재판관은 “연방대법

원에서 최소한 3년 이상 일한 대법관만이 선출될 자격이 있다. 1951년부터 1990년에 이르는 기간 24명의 연방대법원 대법관이 연방헌재 재판관이 되었는데 그중 16명이 일반민형사사건을 다루는 연방대법원 대법관 출신이었고, 1명이 연방재정법원, 4명이 연방행정법원, 2명이 연방노동법원, 1명이 연방사회법원 출신이었다. 이러한 인적 구성이 초창기 두 최고법원 사이에 존재했던 긴장관계를 약화시키는데 적잖이 기여했던 것이다. 우리 헌재도 9인의 재판관 중 최소한 3~4인을 대법관 출신 인사가운데서, 그리고 2~3인을 헌법학

교수 가운데서 임명한다면 현재 헌재가 앓고 있는 「권한과 위상의 불일치」라는 중병은 상당부분 치유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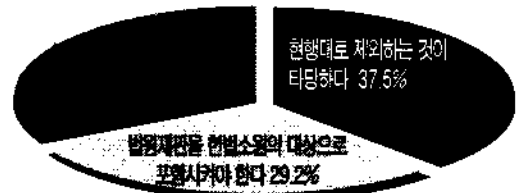
기관 이기주의 버려야 한다

마지막으로 헌재와 대법원 두 기관의 갈등의 출발점은 결국 기관 이기주의라는 발상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어 한마디를 덧붙이고자 한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여, 그대들이 다루고 있는 지위와 권한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그러한 지위와 권

한이 왜 그대들에게 주어진 것인가? 그대들이 「권한의 충돌」로 알고 있는 것이 실은 국민에 대한 「의무의 경합」이 아닌가? 따라서 누구든 그러한 의무를 오로지 혼자서 감당하겠다고 고집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그 의무를 완수함에 합당한가를 자문해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공동의 목표를 향해 상호 자제하고 협력하는 현명함을 기대할 수는 없는가? 정녕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여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한국의 사법을 어디로 끌고갈 작정인가? 법률가의 기본적인 덕성인 평정심과 사려 깊은 성찰이 요청되는 때이다.

사법 통계청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에서는 지난 1994년 9월 1일 제2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인선시기를 맞아해서 한국공법학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공동주최로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구성과 시민참여」라는 공청회를 열었다. 이 때 참여연대 사회조사실에서는 전국의 헌법 및 행정법 교수 40명, 변호사 55명(최종응답자)을 대상으로 「헌법재판소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응답방식 : 우편과 팩스, 변호사집단 선택방법 : 계통표집법)
헌법소원의 대상 가운데 법원의 재판을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설문조사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헌법소원의 대상에 대하여 법원재판 제외의 타당성에 대해서 37.5%가 긍정적인 의견을 낸 반면, 61.5%는 부당하다고 보고 있었다. 이 중에서도 32.3%는 법원의 재판 뿐 아니라 통치행위 전반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보고 있었다. 이 외에도 “앞으로 헌법재판의 방향이 어떠해야 한다고 보는가?”의 질문에 대하여 “보다 사법적극주의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응답이 71.9%, “보다 엄격한 합헌해석에 충실해야 한다”는 응답이 16.7%로 현행 규정보다 헌법소원의 적극적 기능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제1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판결을 기초로 조사된 설문이었다. 사법적극주의에 대한 비평은 제2기 재판관들을 향한 것이지 않았겠는가!

사법에도 도입해야 할 서비스 마인드

김창준 변호사

조 합당한 얘기를 하여보자. 그 동안 뿌리가 잘 뽑히지 않고 근자에 이르러 더욱 지능화·대형화하고 있는 탈세, 마약, 폭력사범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퇴치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예를 들어 이렇게 하면 어떨까. 탈세를 적발한 공무원에게는 탈세액의 절반을 포상금으로 주는 것이다. 탈세액만큼 추징할 수 있게 하여 국고수입을 그만큼 늘어나게 한 공로가 있었으니까. 마약사범을 검거한 민원수사관에게는 압수된 마약을 시가로 쳐 그 중 절반을 포상금으로 주는 것이다. 그 마약이 사중에 유통되어 가정이나 사회를 피폐하게 만들었을 경우의 피해정도를 감안하면 그 공로는 포상금만으로 칭찬하기에 부족하다. 폭력사범의 경우 역시 압수된 장물이 있다면 그 절반을 수훈을 세운 공무원에게 주는 것이다. 주먹세계의 검은 자금이 그들의 세력을 확장하는데 자양분이 되고 있음을 생각해 보라. 공무원 개인에게 주는 것이 뒷하다면 그가 소속된 단위조직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컨대 첨단 마약수사장비의 구입이나 새로운 수사기법도입을 위한 수사관 해외연수 확대, 신명을 바쳐 일하다 목숨을 잃거나 장애자가 된 공무원의 가족들에게 생계비 보조나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혹자는 이에 대해 그러면 그 동안 위와 같은 고질적인 범죄들이 소탕되지 않은 것이 공무원의 나태함 때문이란 말이나고 반론을 제기할 것이고 또 점잖은 공무원들을 모두 돈의 노예로 만들 셈이나고 질책할 분도 계실 것이다. 한편으로는 왜 탈세나 마약, 폭력사범을 다루는 공무원에게만 혜택을 주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분은 다 좋은데 도대체 그들에게 돌아갈 예산이 어디 있

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다.

이 반론들은 모두 지극히 타당하다. 그러나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꼭 그런 방식으로 하자는 것이 아니다. 요즘 공무원의 사기가 건국 이래 가장 심각할 정도로 저하되어 있다 하기에, 그리고 정부부문의 부진이 우리의 국가경쟁력을 대만이나, 말레이시아, 심지어 중국보다 뒤지게 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세우고 있다는 사뭇 심각한 공식보고가 나오고 있기에 뭔가 변화와 쇄신을 위하여 공공부문에서 분발을 해야 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말하고자 함이다. 이 짧은 글에서 정부의 서정쇄신작업이나 개혁정책에 대하여 왈가왈부할 뜻은 추호도 없다. 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도보다는 사람”이고 사람을 움직이는 데에는 “체찍”만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기에, 국가경쟁력의 위기가 운위되는 이 시점에서는 그 “사람”을 변혁시키는 “당근”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것이다.

요체는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인센티브제도를 과감히 도입하고 공공부문도 서비스 산업의 일영역이므로 개개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국민의 생활을 더 편리하고 윤택하게 만들 것인가” 하는 서비스 마인드를 갖도록 하는 일이라고 본다

다소 부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지만 필자가 자주 처리하고 있는 선박의 가압류사건에서 처럼 시간(아니, 심정적으로는 ‘초’를!)을 다투는 사안이 들어오면 법원은 한밤중이나 휴일에도 가압류결정을 내리고 집달관 역시 야간 휴일집행을 마다 않고 일어나는 분위기가 되면 정말 좋을 것이다. 가압류결정을 받는 데에는 공탁을 먼저 해야 하는데 입회계장도 없고, 은행도 쉬고, 보증보험회사도 쉬고, 공탁공무원도 쉬기 때문에 휴일의 공탁은 애시당초 불가능하다. 그러나 법문상 담보 제공

없이도 가압류명령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아니 사실은 무담보가 원칙이다) 관례에 구애되지 말고 변호사의 보충설명을 듣고 판사 혼자서 가압류결정문을 발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집달관 역시 선박가압류 같은 긴급한 경우에는 집에서 쉬는 중에도 밤이나 휴일 구분 없이 언제든지 집행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럴 때 이와 같은 특별서비스를 제공받는 민원인에게는 특별할증수수료를 부담토록 하여 그로써 공무원처우개선 기금으로 사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피를 말리는 시간 싸움에 말린 민원인에게 배당된 재판부가 운수 사납게도 재판중이거나 현장검증 나가 부재함으로써 금쪽 같은 시간을 속삭이면서 허송해야 하는 서글픈 심정을 법원은 과연 이해하고 있는 것인

지. 집달관이 남아돌지만 배당 받은 부서 소속 집달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집행을 거절하거나 요행히 배당 받은 부서에 집달관이 있어도 선악이 있어 바쁘다고 핑계대는 집달관을 달래기 위하여는 부득이 급행료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 또한 알고 계시는지. 이로써 그 민원인은 꼼짝없이 범법자가 되는 것인데 이렇게 수요와 공급의 부조화를 양성화하여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진정 없는 것인지. 법원과 검찰이 처리하는 사건들 중 시간을 다투는 일이 오직 선박가압류에 한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이들 사건을 처리하시는 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신 것이고 더 좋게 개선하는 방법과 수단을 갖고 있는 분들도 그분들이다.



단 평

국가보안법에 대한 사법부의 또 하나의 견제

지난 5월 22일 서울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시환 판사는 미화 1만4천 달러를 가지고 인천항에서 중국행 선박에 몰래 타고 북한으로 가려다 울산 항에서 적발되어 구속된 북한 망명자 김형덕 피고인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잠입탈출)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죄를 적용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잠입탈출죄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탈출로 인해 구체적 위협성이 존재할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 동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자의적인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정당한 범위'의 해석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의 변정수 재판관은, '이는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한정할 수 있는 아무런 기준도 없는 매우 애매모호하고 추상적 개념이고 그 결과 범죄구성요건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에 반할 뿐만 아니라 똑같은 행위일지라도 사람에 따라 차별 대우할 수 있는 것이어서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반대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 결정 1993. 7. 29. 92헌바48)

그런데 이번 판결은 국가보안법 적용에 '구체적 위협성'의 요건을 엄격히 해석함으로써 국가보안법 적용의 남용에

제동을 건 셈이다. 통일로 가는 길에 많은 국민을 동참시키기 위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위협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한 한 통일논의와 남북의 접촉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 판결의 의미는 적지 않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북한 대학생과 공동사업을 벌이자는 내용의 팩시밀리를 주고받다가 구속기소되었다가 1심에서 보안법 부분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사법 감시」 제3호, 31쪽 '대북 단순통신 국가보안법 적용안된다' 기사 참고)이 2심에서는 다시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이 적용됨으로써 그동안 끊임없이 논란이 되어온 국가보안법의 '자의적 해석'이 실제로 증명되는 역설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 사건은 1심에서 단순히 북한과 팩시밀리를 주고 받은 것만으로 국가보안법에 위협이 되지는 않는다

「북한에 보낸 서신에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 등 북한정권과 동일한 주장을 담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국가의 안전, 존립이나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줄 명백한 위협이 있다고까지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같은 행위는 국가보안법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함으로써 국가보안법 처벌규정에 대한 명쾌하고도 합리적인 판단이라는 소리를 듣기도 했었다.

진실을 밝히기가 이렇게 힘들 줄이야

민영순(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

서울시 공무원의 아내이며 두 아이의 어머니인 저는 살림에 보탬이 되고자 낮에는 유아놀이방의 보모로 일하며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주위의 평판을 들으며 살아왔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두 열한명의 선량한 사람들이 정미경, 김상덕(현역 소령) 부부와 이영주(김상덕 부하의 부인), 이 세사람이 공모한 사기사건으로 7억 여원에 이르는 재산손실을 입었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절망감에 빠져 있습니다.

84년 정미경과의 인연이 시작된 후 저는 친형제보다 더 가깝게 지냈으며 아울러 김상덕에 대한 신뢰감도 깊어져 갔습니다. 그러던 중 정미경, 김상덕 부부가 청주로 이사를 했고 얼마후 직업군인들에 대한 특혜 차원에서 분양권이 나온 아파트를 자신들은 경제적 능력이 안되니 옛일에 대한 은혜도 갚을 겸 언니(정미경이 본인을 부르던 호칭)의 노후를 생각해 투자해 두면 어떻겠느냐는 정미경의 권고가 있었습니다. 물론 남편의 뜻이라는 말과 함께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한푼 두푼 절약해 모아 두었던 돈과 계를 들어 마련한 돈으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착실히 정미경, 김상덕의 계좌로 보냈습니다.

그 후 경기도 구리시에 있던 군부대가 다른 지방으로 이전하여 그 부지를 일부 장교들에게 포상의 의미로 불하하는데 자신들은 경제적 능력이 없으나 농치기에는 너무나 가까운 기회이니 대신 불하받으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국방부의 기밀사항이라는 단서를 붙여서입니다. 저는 일개 소령에게 그러한 포상이 있다는 말이 잘 납득이 되지 않았으나 워낙 군부대에는 기밀사항이 많을 거란 생각과 포상 서열상 김상덕의 윗 사람들은 더많은 양이 할당되었다는 정미경의 말을 일말의 의심도 없이 믿고 맡았습니다.

저는 혼자 다 감당할 수 없는 양의 땅을 그동안 뼈뺀 하게 살면서 신세진 여러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뜻으로

소개하여 다같이 혜택을 누림이 도리라 생각되어 다른 피해자들에게 이일을 권하여 정미경과 김상덕의 계좌에 입금시켰습니다. 이렇게 일이 진행되던 중 여타의 일들에 대한 권리증 등 그동안 입금시킨 돈들에 대한 청구서 확인을 요구했으나 정미경의 말인즉 이것은 군부대의 이주 이례적인 포상이므로 공개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니 자신들만 믿고 기다리면 곧 등기이전의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무고죄로 억울하게 구속되어

그러던 중 정미경이 말한 시기가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자 막연한 불안감이 들어 청주의 그들의 집에 들러 이런 저런 담소를 나누며 살펴본 즉 그동안 제가 알고 있던 그들의 생활과는 너무나 다른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더욱 불안이 짙어져 보다 적극적으로 물증을 요구하자 아파트 분양이나 군부지불하가 모두 허위였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정미경은 "언니, 미안해!" 만 계속하며 울뿐 더 이상의 말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김상덕 또한 아내가 저지른 일을 내가 어떻게 알았겠느냐며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 발뺌하였습니다.

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저는 서울에서 사기꾼들의 거주지인 먼 청주까지 가서 청주시 서부경찰서(담당 임승열 경사)에 정미경, 김상덕을 고소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일들을 조사하던 경찰서에 김상덕이 나타나 그 지역의 유지행세를 하며 국가의 녹을 먹는 군인의 신분으로 어떻게 그런 일을 꾸밀 수 있었겠느냐며 범인은 오히려 자신과 부인을 이용해 서울의 10명의 피해자들을 농락한 민영순이라고 역설하여 저는 94년 1월 7일 무고죄로 구속되었습니다.

어쨌든 같은 지방 유지의 말만 전적으로 믿고 저의 탄원을 무시한 청주경찰서 형사의 어리석음과 담당 오

세범 검사의 기소로 저는 청주교도소에서 미결수의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청주지방법원 김시철 판사님 덕분에 재판 종결 전에 석방되었고 95년 1월 21일 무죄임이 밝혀졌습니다. 김시철 판사님은 간경화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정미경을 직접 신문하기 위해 청주에서 서울까지 올라오기도 하고, 은행계좌추적을 통해 제가 현금으로 돌려받았다는 돈이 사실은 유일한 증인인 이영주의 계좌로, 정미경 처가 명의의 건물 매입자금으로 사용된 것 등을 밝혀주셨습니다.

그러나 습관적인 검찰의 항소로 또 길고 긴 재판과정을 거쳐야만 했고 96년 1월 19일 항소심(청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재판장 이형하 부장판사, 이재호, 함상훈 판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재판과정에서 정미경이 간경화로 사망하였고 김상덕은 사망한 부인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잘못된 초등수사가 사건 망쳐

물론 경찰이나 검찰에서 제대로된 수사를 하여 이런 사실들이 밝혀졌다면 문제는 없었을 것입니다.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제 진실을 믿어주지 않는 검찰에 대해 이루 말할 수 없이 화가 나기도 했지만 무죄를 선고받으면 다른 문제도 저절로 풀릴 줄로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저의 경제적 손실과 신용을 되찾기 위해서는 길고 긴 법적 투쟁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고 나니 앞이 막막합니다. 정미경의 상속인인 김상덕에게 이미 남은 재산이 거의 없고, 군인신분이어서 연금 등에는 손을 못대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라는 것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청주시 서부경찰서 임승열 경사가 조금만 더 자세히 조사를 해 주고, 오세범 검사가 기소권을 조금만 더 신중하게 행사했다면 정미경이 사망하기 전에 이 사건은 종결이 되었을테고 억울한 옥살이나 경제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매듭을 풀기 위해 찾아간 수사기관에서 오히려 사건을 영끌어뜨린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지난 96년 3월 29일 제가 돈을 도로 돌려받았

다고 허위증언을 한 이영주를 대전지검(담당 이재현 검사)에 위증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번만은 검찰이 신뢰할 만한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걱정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이영주의 위증 뿐만 아니라 김상덕이 이 사건에 깊이 연루되어 있음이 법적으로 밝혀져 선량한 사람들의 피해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밝혀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어쨌든 상담을 해 본 변호사들은 제가 잃은 돈을 다시 찾기는 쉽지 않다고 합니다. 사람을 쉽게 믿고 속아 넘어간 제 잘못도 있지만 당사자가 사망하기까지 긴 시간을 끌어야만 했던 원인이 경찰과 검찰의 잘못된 수사에 있다고 생각하면 수사를 담당했던 사람들에게 원망과 분노가 한없이 끓어오릅니다.

공무원으로서 월급까지 차담당하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남편과 아이들을 보면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낍니다. 진실이 꼭 밝혀지고 다시는 저와 같이 수사기관의 오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함께 바뀔시다

행동하는 시민 정의실천 모임

작은 힘이 모여 많은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한 방울의 물들이 바위를 뚫고 작은 시냇물이 모여
큰 강물을 이룹니다.
평범한 시민들이 모여 정의가 감춰림 흐르는 사회를 만듭니다.
여기에 사회정의를 실천하고 행동하는 시민이 모여
정의실천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자그마한 힘이라도 보태고 싶으신 분들의 제보와 참여를 바랍니다.

(가칭) 정의실천 모임의 하는 일

각종 사회비리, 불의 등 고발 사안 조사
→고발장 접수→
참여연대 고소, 고발 활동, 사회개혁운동에 참여

준비위원

심병호(단장), 이성렬, 이재순, 심재화 님

정의실천모임 회원 모집

문의 : 참여연대 김숙경 간사 ☎ 796-8364

사법제자리농기시민모임은 굴절된 사법을 바로 펴고 사법을 사랑하는 진정한 벗이 되고하는 일반시민의 모임이다.

이 모임에서 사법정의가 만발하는 세상을 앞당기는데 뜻을 같이 하고 노력하는 130여명의 평범한 이웃같은 시민회원을 만날 수 있다. 사법제자리농기시민모임은 매달 한 번씩 사법의 문제점을 진단하는 포럼을 개최하고 사법피해사례 발표를 통해 공동해결의 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국민을 위한 소송법을 만들고 입법화하는데 까지 나갈 것이다. 깨어있는 시민으로서 사법제자리농기시민모임에 참여할 시민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사법제자리농기시민모임은 지난 4월 30일 참여연대 회의실에서 4월 월례포럼을 열었고 5월 29일에는 용산가족공원에서 회원 친교의 날을 가졌다. 앞으로 '사법정의를 위해 나선 시민들' 란에는 사법제자리농기시민모임의 활동내용을 정리하여 게재할 것이다.

4월 월례포럼

조서작성, 무엇이 문제인가?

지난 4월 30일 참여연대 회의실에서 사법제자리농기시민모임 4월 월례포럼이 열렸다. 사법제자리농기시민모임 사무국장 이운택씨의 사회로 열린 4월 포럼에서는 회원 도태숙씨와 김병열씨가 자신의 공판조서의 불명확하고 사실과 다른 작성에 대한 경험사례를 발표하였다.

진술내용과 다른 조서에도 의의 제기 어렵다

도태숙씨는 검찰 첫 조사시에 조사를 받는 검찰 직원이 손을 내려라, 바로 앉아라 등의 위압적인 언사를 일삼았다고 한다. 또한 입회서거가 있지도 않았는데 입회서기란에 '강○○'라는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묵비권에 대해 고지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고지했다는 등의 조서를 작성하여 도장을 찍으라고 해서 몇 차례의 실감이를 벌였다고 한다. 결국 도태숙씨의 부친의 이름이 잘못 기재된 것도 고치지 못하고 긴장과 두려움 때문에 사실과 다른 기재내용이 있었으나 그냥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재판진행과정에서는 판사가 공판

진행과정에서 한 말이 공판조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으며 검사가 하지 않은 질문도 10여가지나 공판조서에 기록되어 있는 등 조서가 공판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검찰조서나 변론조서 등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 했다. 또한 도태숙씨는 공판검사가 1년을 구형하였는데도 이후 공판기록을 살펴보니 3년으로 구형되어 있어 검사실에서 직원과 서류확인을 하여 재판연기신청을 하여 이를 바로잡았다고 한다.

김병열씨는 공판일정마다 녹취신청을 하여 공판조서와 녹취록이 어느 정도의 차이를 보여주는지를 자료를 통해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는데, 녹취록과 공판조서의 차이가 너무 많아 법정에서의 조서작성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않음을 쉽게 알 수 있었다.

포럼에서 제기된 문제점

조서 작성과정에서의 수사기관의 강압과 회유에 따라 사실과 다른 조서가 작성되는 경우가 있다. 사실과 완전히 상반되는 내용이 아니더라도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주장을 100% 할 수 없음을 명백하다.

경찰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저지르지 않은 범행을 자백해야 했던 김기웅 순경의 선례를 보더라도 자신의 주장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수사분위기는 반드시 필요하다.

일방적인 수사관의 조서작성 후 제대로 읽어주거나 읽도록 하지 않은 채 여기에 서명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사건당사자의 무지에도 그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아직은 문앞에 가기 꺼려지는 경찰서나 검찰의 높은 문턱에 의해서 조성된다.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인 확정판결이전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하여 공소제기된 사건일 지라도 공판진행과정에 있어서 검찰과 피고인은 동일한 지위를 부여한다고 되어 있으나 실제적으로 공판진행에 있어서 그렇지 못하다.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증거재판주의 및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법원은 검찰과 피고인의 증거(조서)를 동등하게 놓고 공정하고 균형있는 공판진행과 증거판단을 해야 하나 현실은 법원(법원)도 검찰의 우월적 지위에 동조하고 있다.

회원들이 내놓은 대안과 개선방안

조서작성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우선 재판장이 사건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녹취신청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것이 혼시규정이자 강제규정이 아니므로 사건당사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녹취를 인정해 주는 법원의 자세가 필요하다.

두번째로 사건당사자는 이전 기일의 공판조서가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재판기일에 이의를 제기하여 정정신청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공판 후에는 조서를 항상 살펴보는 신경통이 필요하다.

세번째로는 법원의 수를 늘려야 한다.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변호사 수의 증대에 의해 소송비용이 낮아지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변호사의 수 못지 않게 판사와 검사의 수가 획기적으로 증대되어야만 한다. 판사가 서류 중심의 재판을 하지 않고 사건 하나하나에 대해 충분히 심리하고 공판조서도 잘 작성하고 세심한 판단을 할 수 있으려면 담당하고 있는 사건의 수가 대폭 줄어야만 한다. 여기

에 맞춰 검사의 수도 늘어야만 한다. 물론 수자가 늘어난다고 해서 깨끗한 검찰, 공정한 법원이 자연스럽게 되지는 않는다. 시민들이 검찰, 법원에 대해 끊임없이 감시하고 견제해야 우리가 원하는 검찰과 법원을 만들 수 있다.

네번째로 검찰수사과정에서 고소장을 비롯한 고소인척의 증거자료 등을 피고소인에게 보여주거나 설명해 주는 등의 배려도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는 법원의 공판조서의 경우 속기사가 모두 속기하여 가감 없이 공판과정에 나온 진술이 그대로 기재되어야 한다. 그래야 재판장이 바뀌거나 항소심에서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파악하여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다. 공판조서는 공판기일 5일-10일 후에는 작성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지난 공판조서를 보아야 하는데 그것이 편철되지 않을 경우에는 문제가 많다. 조서작성 시일도 혼시규정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제규정으로 바뀌어서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검찰에서 수사하면서 실제 조서는 입회계장이 다 받으면서 검사가 수사한 것으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법원에서는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등으로 검사가 입회서기를 관여시키고 직접 수사를 하는 풍토를 정착시켜야 한다.

건강한 사법은 참여하는 시민이 있을 때 완성 됩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로 운영됩니다.

- 법조인 자료실 운영을 위한 자료수집 및 정리
 - 「사법감시」 등의 매체에 실을 원고 작성
- 「사법감시」, 「사법제자리놓기시민모임」 회원통신 등 우편발송업무
- 법률상담실 상담접수 및 사법피해자 지원활동

회원순례 1

"멧돼지 사건"의 김형국씨

검찰에 대한 책을 엮어내기도 한 김형국씨는 검찰이 부정비리자를 변호하기 보다는 억울한 국민을 편드는 날이 오기를 누구보다도 희망하는 사람이다.

경남 양산에서 '태양농원'을 운영하고 있는 김형국씨. 그의 농장에 씨붙인 호객용 선전문이다. 한 때 1천마리의 멧돼지를 키우며 알차게 농장을 꾸리던 이 분이 사법제자리농기시민모임의 회원이 된 사연도 바로 멧돼지 때문이다. 사법제자리농기시민모임이 창립된 지난 3월 20일 이후 그는 거의 모든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한다. 양산에서 서울까지 천리길을 마다않고 차를 몰고 달려오는 김형국씨. 태양농원의 멧돼지 고기 때문인지 양산의 맑은 정취때문인지 56세의 나이보다 훨씬 젊어보이는 그는 각종 모임에 거르지 않고 참석하는 열정적인 회원이다. 무슨 사연이 그토록 깊길래, 무슨 한이 그토록 맺혔길래 그로 하여금 이런 정열을 가지게 만들었을까.

지난 91년부터 가격이 훨씬 싼 집돼지를 멧돼지라고 속여 파는 전문사기꾼들을 만나 검찰에 발을 들여놓기 시작했던 김형국씨는 이제는 멧돼지 사기꾼들 뿐 아니라 검찰에 의한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사법제자리농기시민모임을 찾았다고 한다. 김형국씨의 첫 검찰 경험은 91년 10월의 일이었다. 멧돼지를 사육하는 농민들에게 계약금만 지불하



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등 온갖 방법으로 선량한 농민들을 기망하는 최모씨를 사기죄로 양산경찰서에 고소

하였으나 2년만에 수원지검에서 무혐의 처리가 되었던 통지를 받았다. 억울해 할 겨를도 없이 오히려 최모씨가 계약금 반환소송과 위약금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변호사도 없이 자신의 법률적 무지와 상대의 허위증언으로 인해 적반하장으로 이 소송에 패소하고 말았다고 한다.

사기꾼들은 김씨와 같은 멧돼지 사육농민들로부터 적은 숫자의 멧돼지를 산 다음 일반 양돈업자로부터 집돼지를 사서 도축하여 섞어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고 멧돼지사육자협회에서 최씨등과 식품회사를 고소했으나 어떻게 된 셈인지 식품회사들은 불기소처분, 최씨는 집행유예의 가벼운 처벌로 사건이 종결되어 버렸다고 한다. 오히려 김형국씨는 상대방으로부터 무고, 명예훼손, 폭력, 방화 등의 혐의로 연고지도 아닌 서울지검에 고소를 당해 만 3년 2개월만에 무려 13회의 평풍수사 끝에 울산지청에서 명예훼손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그후 꼭 같은 사건으로 수원지검에서 다시 한 번 기소유예를 당하는 등의 이해할 수 없는 검찰의 처분이 있어 이에 불복하여 많은 기관에 수없이 진정과 탄원을 내기도 하였다.

『대한민국 검찰의 부정비리 및 검찰의 부패사건』 1,2권을 만들어 낸 그는 검찰이 부정비리자를 변호하기 보다는 억울한 국민을 편드는 날이 오기를 누구보다도 희망하는 사람이다. 이어지는 고소와 피고소로 아직도 성남지원에서 재판과 받고 있는 김씨는 이제는 어려운 법률용어가 입에 뻐 정도로 '법률전문가'가 되어 있다. 그냥 포기하고 말라던 가족들과 멧돼지 사육 농민들도 이제는 그의 뜻을 이해하고 격려해 준다고 한다. 그 많던 멧돼지가 그의 기나긴 법정투쟁 때문에 이제 몇십마리로 줄어버렸다. 그 빈 농장을 돌아보면서 일찌감치 포기하고 말았으면 하는 생각도 한다는 김씨는 그러나 자신의 피해 하나가 아니라 억울한 사람이 이 땅에서 없어지도록 하기 위해 작은 노력을 해 온 자신을 후회는 않는다고 말한다.

김형국씨의 검찰행이 언제 끝나게 될는지. 그의 불행이 끝나는 날은 바로 검찰이 바로 서는 날이자 일반 시민들이 멧돼지 고기를 진짜 멧돼지로 믿고 먹을 수 있는 날이 될 것이다.

5월의 행사
사법제자리농기시민모임
회원 친교의 날

96년 5월 29일 오후 2시 용산 가족공원, 화창한 날씨에 50여명의 회원이 참석하여 열린 친교의 날을 통해 회원들은 오랜만에 법정 송사에 시달린 마음을 달래고 같은 처지의 회원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날 행사에는 박경자 회장이 떡을, 이재순 운영위원이 집에서 정성껏 손수 만든 잡채를, 진재덕 운영위원이 30인분의 김밥을 준비하여 가족공원의 푸른 잔디에서 푸짐한 야외식사를 하였다.

이날 격려차 참석한 유명종 참여연대 운영위부위원장은 우리 개개인의 힘은 부족하지만 사법정의를 열렬히 염원하는 회원들이 많이 모여들고 단합된 힘으로 최선을 다하여 노력한다면 권위주의적이고 굴절된 사법의 아성도 결국 무너져 국민을 떠 받드는 사법을 만들 수 있다고 확신에 찬 격려의 말을 해주셔서 참석한 회원들이 많은 힘을 얻기도...

이날 행사에는 회원들이 사법정의를 염원하는 열기가 매우 높다는 것을 실제로 증명해 주었는데 멀리 양



산에서 김형국씨, 마산에서 배성진씨, 제주도에서 이승엽씨가 참석하였다. 이밖에도 대전등 지방 각지에도 시민모임의 발전과 왕성한 활동을 기대하는 많은 회원들이 참석하였다. 결국 모든 참석 회원의 뜻으로 준비한 참여연대 티셔츠를 가장 멀리서 오신 위 회원 세분에게 증정하고 추일화 회원이 선뜻 내놓은 넥타이핀을 참석 회원 전원에게 나누어 드려 시민모임의 우의를 다지는 자리가 되었다.

이날 행사를 마치며 사법제자리농기시민모임 발족에서 천명한 것처럼 앞으로 활동을 통해 법조인들과 협력하여 국민의 입장에서 꼭 필요한 사법제도와 법률의 개선을 위해 실질적으로 노력할 것을 결의하고 이에 뜻을 같이 하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각자가 주변에서부터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올 가을에는 시민모임 회원 전원과 가족들이 함께 가을 밤의 정취를 느낄수 있는 가을 여행을 하기로 하였다. 그날까지 사법정의를 위한 시민모임의 활동이 작으나마 성과를 만들고 회원들이 사법의 미래에 희망을 가질수 있게 되길 기원하면서 아쉽게 친교의 날을 마감하였다.

격월간 「사법감시」

통권 제5호 / 1996년 6월

등록번호 마-2428

발행인 김중배

편집인 박은정

편집자문위원 남영진(한국기자협회 회장)

유현석(변호사)

한상범(교수, 동국대 법학)

한승현(변호사)

편집위원 월강기원(변호사)

박경자(사법제자리농기시민모임 회장)

박원순(변호사)

안경환(교수, 서울대 법학)

차병직(변호사)

한인섭(교수, 서울대 법학)

통신위원 권규대(변호사/부천)

김의숙(변호사/부산)

김철준(변호사/수원)

나영명(전국병원노련 편집부장)

문종운(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박래군(인권운동사랑방 사무국장)

조국(미국 버클리대학)

발행처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사법감시센터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 796-8364 / 팩스 793-4745 / 통신 ID : PSPD